

#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

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

<http://www.maf.go.kr>



## 농림부

“친환경축산으로 안전축산물 공급”

농림부 도서실



0009548







#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

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

2004. 2



농림부

“친환경축산으로 안전축산물 공급”



= 차 례 =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개요 .....             | 1  |
| II. 시행지침 .....            | 11 |
| III. 문답자료 .....           | 55 |
| IV. 직불금 조건표 .....         | 69 |
| V. 참고자료 .....             | 83 |
| 1. 외국의 친환경축산직불제 사례 .....  | 85 |
| 2.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 기준 ..... | 89 |



# I. 추진 개요





## 1. 도입배경

참여정부 국정과제로 개방화  
시대의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 
“친환경축산직불제” 도입

- 우리나라의 축산은 수입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, 가축사육의 규모화·집단화 및 소비지 인근 지역에서의 밀집사육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며 성장해 왔음
- 축산분뇨처리 미흡, 질병발생 등으로 국민들은 축산업을 환경오염 산업으로 인식
  - 축산분뇨의 방치,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토양·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
    - 지역에서 축산업의 신규진입 또는 농장이전시 다수민원 발생 등으로 입지확보에 어려움
  - 축산물의 위생·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나
    - 구제역, 돼지콜레라 등 악성 전염병의 잦은 발생과 유해물질 관리미흡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가중
- 또한, 악취방지 등 환경규제 강화, 유기축산물 공급, 동물복지 등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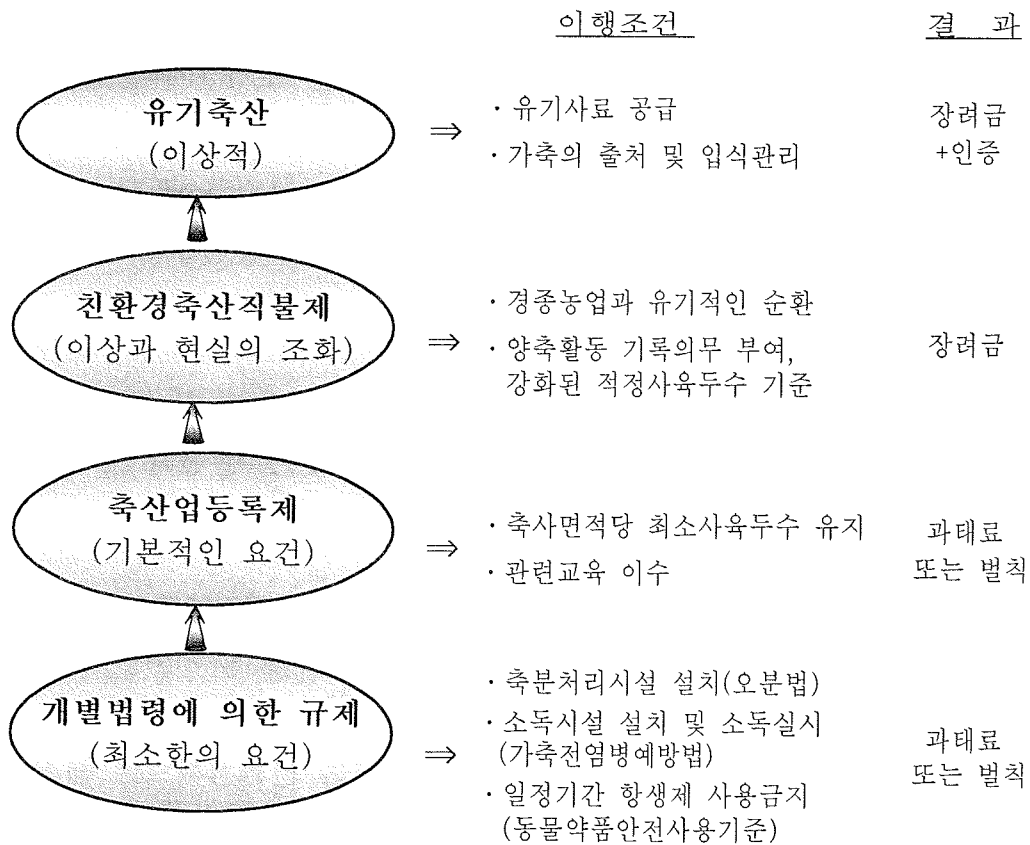
◆ 앞으로,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 ◆

## 2. 친환경축산의 개념

### □ 친환경축산의 정의

-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시킴으로써 (i) 환경보전 (ii)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(iii)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
- 환경에 대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,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와 환경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생산시스템 관리

### □ 친환경축산을 위한 정책수단간의 관계



### 3. 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계획

#### ① 친환경축산 실천지침(권장+이행사항)

##### 친환경축산을 위한 실천지침 (Good Livestock Practice for Environment)

-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재활용,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경종 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하여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최소화한다
-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변오염을 방지하고 사육장을 깨끗이 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여야 한다
- 가축 사육밀도는 가축의 건강,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
-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화학약품(항생제 등)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배제하며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킨다
- 가축은 최대한 초지 및 야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
  - 충분한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운동장을 확보한다
  - 가급적 케이지사육은 지양한다
- 가축의 사육 및 이와 관련된 경영활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열람을 요구할 때 응할 수 있어야 한다

②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 : 기본 + 인센티브(선택)

기본 프로그램

<축종별 기본요건> : 축분 발생량 감축 및 발생분뇨 토양환원

① (한육우, 젖소) : 조사료포 확보, 발생분뇨 토양환원

- 축산분뇨의 농지환원을 통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
  - 농지의 산성화 방지 등 지력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방지
  - 휴경으로 황폐화될 수 있는 농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 보전 및 농지의 훼손방지(필요시 농지 등으로 복귀 용이)
- 확보방법 : 사료포(논, 밭) · 초지를 소유 또는 임차
  - 축종별 분뇨 처리기준면적의 60%이상 확보
    - 사료포를 연 2회이상 사료작물 파종 · 생산 등에 이용
    - 참여농가 소유(임차)농지가 쌀생산조정제, 마늘작목전환사업에 참여한 경우 확보 필요면적에는 포함시키되, 직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
    -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[별표 2]에 의한 하급초지(25톤/ha미만) 제외
- 이행요건 : 확보된 사료포에 발생분뇨의 60% 이상을 환원
- 조사료포 확보면적(분뇨처리기준)

|       | 처리기준면적<br>(A)              | 확보필요면적<br>(B=A*60%) | 농가평균보유면적<br>(C) | 추가확보예상면적<br>(D=B-C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· 한육우 | 622m <sup>2</sup> /두(188평) | 374(113)            | 291( 88)        | 83(25)              |
| · 젖 소 | 1,524(461)                 | 916(277)            | 651(197)        | 265(80)             |

\* 분뇨처리 기준면적은 초지, 논, 밭 모두 동일기준으로 적용

<이행 확인방법>

- 농가는 연 2회이상 사료작물 파종 및 생산, 이행기록 장부 기장
- 농지원부(초지관리대장, 토지대장 포함) 및 1년이상 임대차계약서를 시장 · 군수가 확인

② (돼지·닭) : 분뇨발생량 감축, 발생분뇨 토양환원

- 축산분뇨 발생량 감축을 통한 환경오염 부담경감과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악취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
- 이행요건 : 사육밀도 완화로 분뇨발생량 20~30%수준 감축
  - 발생된 분뇨를 퇴·액비로 공급(축분 비료업체 위탁처리 포함) 하거나 자기소유(임차) 농지 또는 경종농가와 계약을 통해 처리 (해양 투기 제외)
- 돼지 사육형태별 면적기준(사육밀도 20% 완화)

|        | 일관경영 <sup>1)</sup>     | 번식경영 <sup>2)</sup> | 번식경영 <sup>3)</sup> | 비육경영 <sup>4)</sup> | 비육경영 <sup>5)</sup>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등록제(안) | 0.89m <sup>2</sup> /두  | 2.51               | 0.93               | 0.72               | 0.87               |
| 직불제(안) | 1.068m <sup>2</sup> /두 | 3.012              | 1.116              | 0.864              | 1.044              |

<sup>1)</sup> 일관경영 : 번식·분만·자돈·비육, <sup>2)</sup> 번식경영 : 번식·분만,  
<sup>3)</sup> 번식경영 : 번식·분만·자돈, <sup>4)</sup> 비육경영 : 자돈·비육, <sup>5)</sup> 비육경영 : 비육

- 닭 사육용도별 면적기준(사육밀도 20% 완화)

|     |             | 등록제(안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제(안) |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| 개 방                    | 무 창                    | 개 방    | 무 창    |
| 육 계 | 케이지         | 0.042m <sup>2</sup> /수 |                        | 0.0504 |        |
|     | 평 사         | 0.066m <sup>2</sup> /수 | 0.046m <sup>2</sup> /수 | 0.0792 | 0.0552 |
| 산란계 | 케이지         | 0.042m <sup>2</sup> /수 |                        | 0.0504 |        |
|     | 케이지<br>(육성) | 0.025m <sup>2</sup> /수 |                        | 0.030  |        |
|     | 평 사         | 0.11m <sup>2</sup> /수  |                        | 0.132  |        |

\*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 사육기준 적용

<이행 확인방법>

- 사육두수는 현지실사, 생산물 출하량, 사료구입 영수증(사료업체 전산 기록), 기타 거래기록 등을 참고하여 시장·군수가 확인
- 분뇨의 퇴·액비 공급, 토양환원 등은 시장·군수가 거래확인서, 이행 기록 장부 등과 계약 경종농가를 방문 확인

### <공통 부대요건>

#### ①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(주 1회이상)

- 발생한 축산분뇨 처리내용 및 경로
  - 처리형태(퇴·액비 등), 처리방법(농지환원, 판매 등), 처리시기 등
- 조사료 생산 및 활용(소)
- 예방접종, 전염병 검진,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, 항생제 사용내용 등

#### ②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

-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(수과원 고시 제2003-4호) 준수

#### ③ 축산농가의 환경·방역관련 교육 이수

- 전문 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 이수(4시간 이상)

### 인센티브 프로그램

-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·관리로 환경개선

### 3] 대상농가 및 사업물량

#### □ 대상농가

- 축산업등록을 마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참여 희망농가(농업·농촌기본법에 의한 “영농법인” 포함, 상법에 의한 “회사법인” 제외)
  - 최근 2년이내에 가축전염병예방법, 오분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가
  - 최근 2년이내에 축사내 및 주변환경이 청결하여 민원발생 사실이 없는 농가
  - \* 가축분뇨를 해양투기하는 농가 제외

#### □ '04 사업물량

- 축종별 시범사업 농가수는 사육농가, 분뇨발생량 등을 감안, 배분
  - '04 시범사업 농가수 : 1,000호(한우 200, 젓소 300, 돼지 400, 닭 100)
  - \* 도별 물량은 축종별 도별 사육두수 비율로 배분

#### 4)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기준

- 기본 프로그램 이행 : 1,300만원/호 한도내 지급
-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: 200만원/호 한도내 추가 지급  
(인센티브만 참여불가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 부 요 건   | 직불금 지급기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기<br>본<br>프<br>로<br>그<br>램 | (한육우·젓소)<br>① 조사료포 확보<br>(처리기준면적 60%이상)<br>② 발생된 분뇨의 60%이상 사료포<br>환원                      | ○{(처리기준면적~확보필요면적)<br>-농가평균보유면적}×570원/평<br>* 소득차(10a당)=171,500원<br>(쌀-사료작물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돼지·닭)<br>① 분뇨발생량 감축<br>(사육밀도를 등록제 기준대비<br>20~30% 완화)<br>② 발생 분뇨를 퇴·액비로 판매, 농지<br>공급 등 처리 | ○{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<br>(20~30%)}×두당소득×50%<br>- 두당소득 : 돼지 50천원, 닭 1.5<br>* '04 지급소득 : 돼지 40천원, 닭 1.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공통 부대요건)<br>①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<br>②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<br>③ 환경·방역관련 교육 이수                 |  |
| 인<br>센<br>티<br>브           | ①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<br>조경수 등 식재·관리  | ○조경수 구입비용<br>(30천원/그루이내)×50%   |

- \* 축산분뇨처리(오분법), 소독시설설치 및 소독실시(가축전염병예방법), 항생제 사용(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)과 관련, 위반사실 발생시 횟수에 따라 제재
- 공통 부대요건 1~2회, 축종별요건 1회 위반시 : 시정지시 및 직불금 10~20%감액,
- 공통 부대요건 3회, 축종별요건 2회 위반시 : 사업취소



<참고 1>

## '04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급예시

### □ 전 제 : 기본 + 인센티브 프로그램 충족

○ '02 소득기준을 적용하되, '04 지급단가는 이행기간(8/12)을 감안하여 80%수준 지급

① 기본 직불금 : (소) 조사료포를 분뇨 처리기준면적의 60%이상 확보,  
(돼지·닭) 분뇨발생량 20~30%수준 완화

· 소 : {(처리기준면적-확보필요면적)-농가보유 평균면적}×570원

\* 지급범위 : 한육우 25~100평/두, 젓소 80~264

· 돼지·닭 : {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}×두당소득×50%

\* '02 두당소득('04 지급소득) : 돼지 50천원/두(40), 닭 1.5천원/수(1.2)

② 인센티브 : 조경수 식재·관리(농가당 50그루)

\* 지급단가 : 30천원/그루 이내×50%

<축종별 내역> : 전업규모 수준

| 축종  | 사육규모   | 직불금 지급액(천원) |      |             | 지급한도<br>규모<br>(1,300만원)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| 기본          | 인센티브 | 합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육우 | 50두    | 713~2,850   | 750  | 1,463~3,600 | 365                     |
| 젓소  | 50두    | 2,280~7,524 | 750  | 3,030~8,274 | 133                     |
| 돼지  | 1,000두 | 3,740~5,180 | 750  | 4,490~5,930 | 2,600                   |
| 닭   | 3만수    | 3,000~4,154 | 750  | 3,750~4,904 | 86,670                  |

\* 돼지 산식 : (사육밀도 완화두수×20천원)+(조경수 50그루×15천원)

## Ⅱ. 시 행 지 침



##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

### 1. 목 적

-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 경관향상,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
-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

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
- 사업참여 농가를 친환경축산 정착의 핵심경영체로 육성
-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(준수)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(또는 추가비용)에 대하여 일부 지원
- '04~'05년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후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재설정  
- 지속적인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보완으로 점진적 확대

### 3. 근거법령

- 농업·농촌기본법 제39조(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)
- 세계무역기구(WTO)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국내지원 정책의 시행)

#### 4. 2004년도 지원계획

| 구 분       | 사업량    | 사업비(백만원) |         |    | 비 고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| 계        | 보조      | 융자 |           |
| 합 계       | 1,000호 | 5,773.0  | 5,773.0 | -  |           |
| ○친환경축산직불금 | 1,000호 | 5,594.0  | 5,594.0 | -  | · 한우 200호 |
| - 직불금     | -      | 5,219.0  | 5,219.0 | -  | · 젓소 300  |
| - 인센티브    | -      | 375.0    | 375.0   | -  | · 돼지 400  |
| ○사업관리비 등  | -      | 179.0    | 179.0   | -  | · 닭 100   |

#### 가. 지급기준

- 지급대상 :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 농가
  -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
- 대상축종 : 한육우, 젓소, 돼지, 닭(산란계·육계)
- 지급단가
  - 기본 프로그램 이행 : 1,300만원/호 한도
  -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: 200만원/호 한도(인센티브만 참여 불가)
  - 관리비 : 시장·군수의 이행점검비(151천원/호)

#### 나. 사업주관 :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)

-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: 농림부
- 기본계획하에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: 도지사
  - 축종별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농가수 배정
  - 시·군간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
-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: 시장·군수
  - 사업홍보,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
  - 대상자 선정,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·정산

- 이행기록 장부 기장, 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 및 축산농가 교육 등을 시장·군수 책임하에 다음 각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실시
  -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확인 : 시·군(농업기술센터)
    - 이행기록 장부 기장, 조사료포 확보,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
  - 발생분뇨 퇴·액비 처리 지도 및 확인 : 시·군(농업기술센터)
    - 작물별 시비량 및 유통경로 확인,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
  - 사업홍보, 이행기록 장부 기장 지도 및 점검, 이행기록 장부 분석, 지도요원 교육 등 : 농협중앙회 및 지역축협
  - 자조금을 활용한 교육 및 운영 : 생산자단체

다. 지원조건 : 국비보조 100%

라. 지급요건(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)

기본 프로그램

-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는 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장 또는 시설(축사, 분뇨처리시설, 조사료포 등)에 대하여 동일한 사육밀도 유지, 분뇨처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이행의무를 다하여야 함

<축종별 기본요건> : [별표 1] “축종별 기본요건 이행기준표” 참조

① (한육우, 젖소) : 조사료포 확보, 발생분뇨 환원

- 축산분뇨의 농지환원을 통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
  - 농지의 산성화 방지 등 지력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방지
  - 휴경으로 황폐화될 수 있는 농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보전 및 농지의 훼손방지(필요시 농지 등으로 복귀 용이)

- 확보방법 : 사료포(논, 밭)·초지를 소유 또는 임차
  - 축종별 분뇨 처리기준면적의 60%이상 확보
    - 사료포를 2회이상 사료작물 파종·생산 등에 이용
    - 참여농가 소유(임차)농지가 쌀생산조정제, 마늘작목전환사업에 참여한 경우 확보 필요면적에는 포함시키되, 직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
    -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[별표 2]에 의한 하급초지(25톤/ha미만) 제외
- 이행요건 : 확보된 사료포에 발생 분뇨의 60% 이상을 환원

**② (돼지·닭) : 분뇨 발생량 감축, 발생분뇨 환원**

- 축산분뇨 발생량 감축을 통한 환경오염 부담경감과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악취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
- 이행요건 : 사육밀도 완화로 분뇨발생량 20~30%수준 감축
  - 발생된 분뇨를 퇴·액비로 공급(축분비료업체 위탁처리 포함)하거나 자기 소유(임차) 농지 또는 경종농가와 계약을 통해 처리(해양 투기 제외)

**<공통 부대요건>**

**①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(주 1회이상)**

- 발생된 축산분뇨 처리내용 및 경로
  - 처리형태(퇴·액비 등), 처리방법(농지환원, 판매 등), 처리시기 등
- 조사료 생산 및 활용(소)
- 예방접종, 전염병 검진,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, 항생제 사용내용 등

**②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 금지**

-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(수과원 고시 제2003-4호, '03. 7.26) 준수

**③ 축산농가의 환경·방역관련 교육 이수**

- 전문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 이수(4시간 이상)

**인센티브 프로그램**

-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·관리로 환경개선

## 마. 사업 추진체계

| 업무흐름   | 시 기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지침시달 및 홍보<br>(농림부 → 도 → 시·군)                   | (2004. 1. 1<br>~ 2.28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지침” 시달(농림부)</li> <li>○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(시·군)</li> </ul>  |
| ↓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② 농업인 등 신청·접수<br>(농업인 → 시·군)                     | (2004. 3. 1<br>~ 3.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축산업등록 대상농가중 희망농가</li> <li>-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접수</li> </ul>  |
| ↓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③ 신청서 적격성 등 제출서류<br>확인·심사 및 결과 통보<br>(시·군 → 시·도) | (2004. 3.21<br>~ 4.1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격여부 등 확인</li> <li>- 사업 신청내용 등 현장확인 조사</li> </ul>  |
| ↓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④ 시·군별 농가수 배정 및<br>결과 통보<br>(시·도 → 농림부, 시·군)     | (2004. 4.10<br>~ 4.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·군 신청서류 등 검토</li> <li>- 축종별 사업대상 시·군 및 농가수 배정</li> </ul>   |
| ↓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⑤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<br>(시·군 → 농업인)                     | (2004. 4.21<br>~ 4.3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의무 부여</li> <li>○ 점검기관(기술센터, 축협 등) 통보</li> </ul>  |
| ↓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⑥ 프로그램 준수 및 이행<br>상황점검(시·군, 기술센터,<br>축협 등 → 농업인) | (2004. 5<br>~ 11월말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·군 : 지급요건 이행여부 종합점검</li> <li>* 전문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</li> <li>- 소 : 조사료포 확보 및 생산, 분뇨환원</li> <li>· 연간 2회 이상 파종 및 재배여부</li> <li>· 쌀생산조정제, 마늘작목전환사업 참여여부 등</li> <li>- 돼지·닭 : 분뇨 발생량 감축, 분뇨환원</li> <li>- 공통 : 이행장부 기록, 일정기간 항생제<br/>사용금지, 환경·방역교육 이수 등</li> </ul> |
| ↓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⑦ 종합점검 및 보조금 지급<br>대상자확정 통보<br>(시·군 → 농업인)       | (2004. 11<br>~ 12.20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·군 : 이행상황 종합점검</li> <li>-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확정 통보</li> <li>* 지원대상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 실시(시·군)</li> </ul>  |
| ↓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⑧ 보조금 지급<br>(시·군 → 농업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004. 11<br>~ 12월말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조금 지급</li> <li>- 농가별로 지급(통장 계좌입금)</li> </ul>   |



## 5. 사업 시행요령

### 가.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

#### (1) 사업신청(농가) 대상

##### ◁사업신청 요령 ▷

-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마치고
- “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신청서”[별지 제1호서식]를 작성, 신청 기간내 주사업장 소재지 해당 시장·군수에게 제출(작성요령 참조)
  - 동일 시·군내 임차를 포함한 사업장(사육시설) 모두를 포함
  - 타 시·군에 소재한 사업장은 별도로 해당 시·군에 신청
  - 직불제 이행기준은 축산업등록을 한 적법한 사육시설을 기준으로 함
  - 참여농가는 적법하지 아니한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을 제한
- 예) 가축사육시설 100㎡(허가 90㎡, 무허가 등 기타 10㎡)에서 100두 사육시 (등록제 기준 사육밀도가 1㎡/두인 경우)
  - 축사 90㎡ 기준 이행계획 수립(사육밀도 20% 완화시 72두 사육계획으로 작성)
  - 참여농가는 소유(임차포함) 사육시설 내에서는 이행기준 두수 이외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안됨
-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요건 준수기한은 '04. 6월말까지이며, 6월이후는 요건 지속 준수(참여 2차년도부터는 참여 신청시부터 요건 준수)
- 축산업 등록 및 분뇨처리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농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제한
- 생산, 입식, 출하 등으로 사육두수 증감시 1개월이내에 사업계획 규모의 양축활동 유지
  - 단, 자연재해,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및 가축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2개월 이내에서 보완
- \* 최소 양축활동 유지규모 : 등록제기준 사육두수 50% 이상

○ 가축두수 산정기준

- 성축, 육성축, 자축 구분없이 각 1두로 간주하고, 1월이내(송아지는 3월이내) 처분(판매)하는 경우 자축은 사육두수에서 제외
  - 자축 : 송아지 3개월령이내, 자돈 1개월령이내, 병아리 초생추
  - 조사료포 산정시(소) : 성축 1두=자우(12개월령 이내) 2두
- 분만 및 갱신을 위한 후보축 입식으로 직불제 요건을 일시에 초과하는 경우 1월이내 요건 준수

≪신청자격≫

- 사업신청전까지 축산법 제20조에 의하여 가축사육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참여 희망농가(농업·농촌기본법에 의한 “영농법인” 포함, 상법에 의한 “회사법인” 제외)
  - 최근 2년이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, 오분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가
  - 최근 2년이내에 축사내 및 주변환경이 청결하여 민원발생 사실이 없는 농가
- \* 가축분뇨를 해양투기하는 농가는 제외

≪신청기간≫ : '04. 3. 1~3.20일까지

≪구비서류≫

- ① 임차(시설, 사료포 등) 계약서 사본
- ② 초지조성허가증 사본
- ③ 건축물대장 사본
- ④ 분뇨처리시설인가내용 사본
- ⑤ 가축사육시설 및 조사료포 약도[별지 제2호서식]

(2)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료포(논·밭), 초지(이하 “조사료포” 등)

- 하천부지(하천법상 하천구역 안의 토지)
  - 다만, 지목은 하천이나 하천구역에 속하지 않는 조사료포는 선정 가능
- 농업기반시설 부지(저수지의 홍수면 부지, 구거 등)
- 조사료포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6조와 초지법 제23조(이하 “관련법”) 규정에 의한 조사료포 등 전용 허가·협의(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)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7조 및 제45조와 초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전용신고를 거친 논·밭, 초지 등
  - 시·군 농지이용실태조사, 초지관리실태조사결과 농지처분 명령 또는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로 조치를 받은 조사료포
-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안의 조사료포로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다음의 조사료포. 다만, 보조금 지급 신청년도 이후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축산업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시장·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
  -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안의 조사료포
  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·농공단지안의 조사료포
  -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의 조사료포
  -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조사료포
- 쌀생산조정제 및 마늘 작목전환사업 수혜대상 조사료포는 직불금 지급 대상면적에서 제외하되, 확보면적으로는 인정
  - \* 쌀생산조정제 등 각종 직불제사업중 한가지 사업만 직불금 지급 가능

### (3) 대상농가 선정절차

#### (가) 시행지침 수립·통보 및 사업홍보

##### ○ 지침 수립·시달

- 농림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도지사 및 시장·군수에게 시달
- \* 농촌진흥청, 농협중앙회는 분야별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·시달하고, 도지사(시장, 군수)에게 통보
- 시장·군수는 농림부 및 도지사가 수립·시달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

##### ○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

- 시장·군수는 관련기관(농업기술센터, 농협 등)의 협조를 얻어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
- 홍보방법
  - 시·군 홍보지, 지방지 등에 게재
  -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·배포
  - 마을 앰프방송,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

##### ○ 농지원부, 초지조성허가대장(이하 “농지원부 등”) 등 자료 협조

- 시장·군수는 농지원부 등을 수시 정비하여야 하며, 사업신청 농가가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전에 농지원부(조사용) 등 사본을 출력하여 농가의 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함

## (나) 사업신청

○ 신청시기 : 2004. 3. 1~3.20

○ 신청기관 : 주사업장 소재지 시·군

\* 타 시·군에 소재한 사업장(사육시설)은 해당 시·군에 신청

○ 신청자격

-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고,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하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으로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프로그램 이행 준수 등을 희망하는 일정규모의 농가

· 돼지 : 축사면적 50㎡이상, 소·닭 : 축사(케이지)면적 300㎡이상

- 최근 2년 이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, 오분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시정명령 등 처벌을 받지 않은 농가

- 최근 2년 이내에 축사내 및 주변이 청결하여 민원발생 사실이 없는 농가

○ 신청서류

-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
- 신청인이 해당 농지(논·밭), 초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· 농지원부 등본(타 시·군·구, 읍·면에서 발급한 경우), 자경증명, 매매·임대차 계약서 등

\* 다만, 농지원부 등의 세대주와 중복 신청 및 초과면적 분할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

\* 타 지역거주자(출입경작자)의 경우에는 농지 등 소재지 읍·면장으로 부터 [별지 제4호 서식] “농지 등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”를 발급 받아 거주지 시·군에 제출하여야 함

-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농지원부 등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읍·면·동장이 농지 등 실제 이용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
- 타 지역거주자(출입경작자)의 경우에도 농지 등의 소재지 읍·면·동장이 경작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

○ 신청절차

- 해당 농업인 등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 사업장 소재지 시·군에 제출

**(다) 대상 가축사육시설, 조사료포, 분뇨처리시설 등(이하 “가축사육시설 등”)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: 시장·군수**

○ 대상 가축사육시설 등 적격여부 확인 : 일제 확인·점검 실시

-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재지, 면적, 처리용량 등 확인
  - 농가별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, 농지원부, 초지조성허가대장 등을 우선 대조·확인
  -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, 초지조성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조회·열람하고 시·군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 실사하여 재확인
-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및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 확인
-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조사료포 등인지 여부(실제지목 일치 여부) 확인
  - 토지대장, 농지원부 및 초지조성허가대장 등 공부상 지목, 연결지번과의 상관성 등을 참고하여 실제 조사료포 등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
  - 전년도 토지이용현황(휴경, 주재배작목 등), 농지·초지전용 허가·협의·신고 여부 등을 관련서류, 농지관리위원 등을 통해 확인

- 계속 경작기간 및 실경작자 등을 확인
  - 농지원부 등의 최초 작성일자, 기록변경 일자, 임차기간, 실경작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, 주민등록의 전·출입 일자, 종합토지세 부과대장 등을 통하여 재확인
- 신청서 접수결과 주사업장과 조사료포 등 소재지가 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[별지 제5호서식]에 따라 해당 시·군에 일괄 확인 (통보) 조치(3.30일까지)
- 신청자격 유무 확인
  - 시장·군수는 축산업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영, 자경, 임차, 위탁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
- 확인결과 등 제출
  - 확인결과 등을[별지 제6호서식]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4.10일까지 제출
  - \* 시장·군수는 대상농가별 축산업 등록현황을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도지사에게 제출

#### 《서류심사》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
- 참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
  - 사육규모, 등록여부, 민원 발생여부, 행정처분 사항 등
-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인허가 내용 확인(건축물대장 등)
- 농지 및 초지 등 조사료포 확보내용(초지조성 허가대장 등)
- 참여 우선순위 농가 여부(적법축사, 조사료포 자가소유) 확인
- 신청서 내용이 이행요건 준수가 가능한지 여부
  - 이행요건 완료시점, 조사료포 확보면적, 사육밀도 준수 등

### ◀ 현장확인 ▶

- 추가적인 사육시설이 있는지 여부
- 사업계획서의 경영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
- 축산업 등록 및 분뇨처리시설이 인가내용과 같은지 여부
- 소독시설 설치 여부 및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여부 확인
- 사업장 주변, 축사내 청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 축산 참여농가로 적정한지 여부
- 생산물 출하 및 가공처, 사료 보유량 및 구입처, 검정사업 참여 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파악

### (라)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결과 통보(공고)

- 선정시기 : 4.20일까지
- 사업대상 지역선정 및 통보(공고) : 도지사
  - 도지사는 시장·군수로부터 제출된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대상 확인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여, 농림부,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고 도 게시판 등에 공고
  - 시범사업지역 선정기준 :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여건(희망농가수, 사육두수, 분뇨처리시설 등), 축종별 특성,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

### (마) 사업대상 농가선정 및 결과통지

- 선정시기 : 4.30일까지
- 지급대상 농가선정 : 시장·군수
  - 시장·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결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
  - 농업인, 적법축사가 많은 농가, 초지 등 자가소유(확보) 비율이 높은 농가,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지 않은 농가 등을 우선 선정



○ 선정결과 통지(4월말까지)

- 시장·군수는 사업계획서 및 현장확인 결과 적합한 농가중 사업량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농가 및 시·군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농가를 선정 후 사업참여 대상농가 선정결과를 [별지 제7호 서식]에 의하여 농가별로 개별 통보하고, 시·군 게시판에 공고
  - 사업설명서, 친환경축산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통보
-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장 입구에 입간판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참여농가임을 표시(시·군에서 일괄제작, 보급)
  - 선도농가로서의 역할 및 친환경축산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
- 안내문은 농가별 주사업장 입구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을 설치
  - 주사업장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설치
  - 안내문은 철판, 아크릴판 등으로 제작하되, 규격은 시설물 또는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
- 해당농가는 사업 대상자 선정·통보시부터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를 주 1회이상 기장[별지 제3호서식]

**안 내 문**

우리 농장은 정부시책사업인 “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” 참여농가로서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항생제 등 화학물질 안전 사용 수칙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

- 참여기간 : 2004년 5월 ~ 2005년 12월
- 농 장 명 : (축사 동)
- 연 락 처 :
- 농 장 주 :
- 확인기관 : ○ ○ 군청 축산과(T : )

※ 본 농장이 친환경적 축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기관 (시·군 축산과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
← 110cm →

↑ 80cm ↓

○ 이의신청 및 정정

-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5월말 까지 시장·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
- 시장·군수는 이의 신청내용 및 소명자료를 참고로 대상 적격 여부, 신청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정하여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지하며,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하는 등 지급대상 선정절차에 준하여 처리
- 시장·군수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정정한 경우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변경내용을 통지

(바) 지급대상 변경

- 가축사육시설 등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[별지 제1호서식]에 의하여 시장·군수에게 변경 신청
  - 변경신청은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
- 시장·군수는 변경 신청된 가축사육시설 등이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[별제 제6호서식]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
- 시장·군수는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[별지 제7호서식]에 의하여 신청인 및 의무 이행사항 점검기관에 통지
-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가축사육시설 등의 경영을 인수 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
  - 보조금은 지급 변경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급함

### (사) 대상자 관리

-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가축사육시설 등을 [별지 제11호서식]에 의하여 별도대장 관리를 하여야 하며,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년도를 포함하여 시범사업 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급
  - 다음연도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변경 프로그램 준수
-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하며, 지급요건 불이행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
- 지급대상자가 주사업장을 타(시범사업대상) 시·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지 시·군에서는 전입지 시·군으로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전입지 시·군에서 관리한다
  -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은 전입지 시·군에서 지급하여야 하며,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·출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
- \* 단, 시범사업대상 시·군이 아닌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,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

## — <관외출입 경영농가 관리> —

### (1) 일반관리 원칙

- 관외출입 경영농가라 함은 주사업장과 조사료포 소재지가 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함
- 관외출입 경영농가는 주사업장 소재지 시·군에 사업신청(변경신청 포함)을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소재지 행정기관과 조사료포 소재지 행정기관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관리를 하여야 함

### (2) 선정결과 통지

- 주사업장 소재지 시장·군수는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조사료포중 관외출입 경작농가에 대해서 농업인별 지급대상 조사료포 지번, 지적 등을 [별지 제4호서식]에 의하여 조사료포 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통보
  - 조사료포 소재지 시장·군수는 주사업장 소재지 시장·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출입경작 농가자료를 관내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(농업기술센터)에 일괄 통지

### (3)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지

- 조사료포 소재지 시장·군수는 관내 의무 이행사항 점검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주사업장 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일괄 통지

## 나.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(Monitoring)

### (1) 요건 이행기한

- 6월말 이전까지 요건을 완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준수
  - 단, 공통 부대요건은 대상자 선정시부터 준수

### (2) 요건이행 및 준수여부 확인

- 점검주기 : 분기별 1회 이상
- 점검기관 : 시장·군수(농업기술센터), 지역축협
  - 시장·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 점검기관 역할분담
- 이행여부 확인방법
  - 시장·군수가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및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요건 이행여부를 확인
  -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는 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주 1회 이상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  - 지역 농·축협에서 농가 이행기록 장부 기록 지도

### (3) 공통 부대요건 준수 의무 이행여부 확인

- i)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관리 확인
  - 대상농가별 이행기록 장부를 주 1회이상 기장관리하고 있는지 및 이행요건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
  - 발생된 분뇨에 대하여 처리량, 처리형태(퇴·액비 등), 처리방법(농지 환원, 판매 등), 처리시기 등이 적절히 기록되고 처리한 곳에 유선 등으로 확인
    - \* 사육두수를 확인하여 “축종별 배출원 단위”등을 기준으로 연간 분뇨 생산량 및 처리량 비교
  - 예방접종, 전염병 검진,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등 확인

ii)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 금지

-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(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3-4호, '03. 7.26) 준수
- 관할 시·군 가축위생시험소에 해당농가의 검사결과 항생제 잔류 여부 확인

iii) 환경·방역관련 교육이수 여부

- 새해 영농설계 교육, 친환경축산직불제 특별교육 등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친환경축산관련 영농교육 이수 여부
- 교육이수 확인방법
  - 시장·군수는 선정된 대상자 명단을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고 시·군 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별 교육 이수현황을 별도로 관리
  -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센터 실시교육 이수자 명단은 센터가 자체 관리
  - 기타 관련교육 이수자는 이수사실(교육확인서 등)을 센터로 제출
- 시·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 명단을 10월말까지 시장·군수에게 통보
- \* 농촌진흥청에서 별도 “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농업인교육 시행지침” 시달

(4) 축종별 기본요건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

가) 소 : 조사료포 확보, 사료작물 파종 및 생산, 발생분뇨 환원

○ 점검 및 이행여부 확인방법

i) 확보 필요면적(직불제 기준) : 한육우 374m<sup>2</sup>/두, 젖소 916m<sup>2</sup>/두

|       | 처리기준면적<br>(A)              | 확보필요면적<br>(B=A*60%) | 농가평균보유면적<br>(C) | 추가확보예상면적<br>(D=B-C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· 한육우 | 622m <sup>2</sup> /두(188평) | 374(113)            | 291( 88)        | 83(25)              |
| · 젖 소 | 1,524(461)                 | 916(277)            | 651(197)        | 265(80)             |

ii) 확보면적 산정방법

- 현 사육두수를 유지할 경우 현 사육두수 기준 면적확보
- 향후 사육두수를 증가시킬 경우 증가두수 기준 조사료포 확보

- 확보면적은 초지, 논, 밭 등 모두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
- 조사료포 확보 필요면적을 초과하여 확보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하되, 두당 처리기준면적 초과면적은 지급 제외
- 정부(지자체 포함) 직불금 사업(쌀생산조정제, 마늘작목전환 등)에 참여한 농지(사료포)는 전체 확보면적중 직불금 사업 참여면적 비율을 지급대상 면적에 곱하여 제외

iii) 확보여부 확인방법

- 자가소유 :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, 초지조성허가대장
- 임차 : 임차계약서(계약자, 계약기간 1년이상)

iv) 이행여부 확인방법

- 조사료포에 연 2회이상 사료작물 파종·생산 등 이용상태 및 하급 초지 해당여부 현지확인

**나) 돼지·닭 : 분뇨발생량 감축, 발생분뇨 적법처리**

○ 점검 및 이행여부 확인방법

i) 사육두수 확인

- 적법측사 이외 또는 타 사업장에서 가축 사육여부 확인
- 사육두수 확인은 실제확인, 표본 확인조사, 기타 사육두수 확인 및 관련자료(출하량, 사료구입량, 거래내역 등) 추정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이행여부 확인

ii) 발생분뇨 적법처리

- 발생된 분뇨를 퇴·액비화하여 공급(축분비료업체 위탁처리 포함) 하거나 자기 소유농지, 경종농가와 계약 공급을 통해 적법처리 (해양투기 제외)
- 자가농지에 살포시 점검기관에 장소, 살포량 등을 통보하고 기록
- 계약농지에 환원시 반드시 분뇨 공급계약을 체결(살포시기, 살포량, 살포면적, 운송방법 등 표시)후 이행하고 점검기관은 경종농가에 확인·위탁처리시 공급량, 공급처, 연락처, 공급내용 등을 기록

## (5) 인센티브 프로그램 준수 의무 이행 여부 확인

### ○ 점검 및 이행 여부 확인 방법

#### i) 이행요건

- 농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사후관리
- 조경수 구입은 관내 산림조합에서 만 가능(영수증 확보)

#### ii) 확인방법

- 조경수 식재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경수가 원활히 착근하지 못하거나 고사한 경우 지급 불가
- 6월말까지 구입·식재하고, 11월말 점검시기까지 착근 및 고사여부 등을 관내 산림조합의 협조를 얻어 확인

## 6.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

- 이행요건 점검결과 불이행 등으로 “사업대상자 선정취소, 보조금 지급불가”로 판명된 경우는 향후 3년간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축산업등록자에 대하여 6월말 까지 기본 프로그램(공통+축종별 요건) 등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[별지 제8호서식]에 의하여 시정지시하고, 동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
- 시장·군수는 위반사항(시정지시사항)을 보완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[별지 제9호서식]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 통보



| 이행요건   |   | 점검결과  | 제재기준   |
|--------|---|-------|--|
| 기본프로그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사료포 확보 및 조사료 생산</li> <li>- 발생분뇨 환원 (60%이상)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| 불이행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1회위반 : 경고 및 기본직불금 20% 감액 지급</li> <li>- 사육두수 기준 조사료포 면적확보 등 시정지시(30일내)</li> <li>○2회위반 : 사업대상자 선정취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돼지·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뇨발생량 감축</li> <li>- 발생분뇨 적법처리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 불이행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1회위반 : 경고 및 기본직불금 20% 감액 지급</li> <li>- 등록제 사육두수 기준 적정 사육시설, 사육두수 유지 등 시정지시(30일내)</li> <li>○2회위반 :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공통 부대요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행장부 기장</li> <li>- 항생제 사용금지</li> <li>- 교육이수 등</li> </ul> </li> </ul> | 불이행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위반회수 기준 : 경고 및 기본직불금 10~20% 감액 지급</li> <li>- 1회 : 기본직불금 10%, 2회 : 20% 감액</li> <li>- 위반사항 통지 및 시정지시(10일내)</li> <li>○3회위반 :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</li> </ul> |
| 인센티브   | ○조경수 식재 및 관리  | 조경수고사 | ○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고사한 경우 지급 불가  |

\* 축종별 기본요건, 공통 부대요건 등 위반내용에 따라 중복제재 가능

## 7. 사업비 지급 및 정산

### 가.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

- 시장·군수는 각 기관별 점검결과 보고(통지)를 근거로 지급대상자별 명단·요건별 이행여부를 확정
  - 지급요건별 이행여부 판정 주관기관 : 시장·군수

## 나. 보조금 산정
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
  - 지급액 산출결과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
- 보조금 산정기준
  - 기본 프로그램 이행 : 1,300만원/호 한도
  -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: 200만원/호 한도(인센티브만 참여 불가)

### <기본 직불금>

- 소 : 쌀소득과 사료작물 소득차, 돼지·닭 : '02소득의 50% 수준
  - 소 : 570원/평, 돼지 50천원/두, 닭 : 1.5천원/마리
  - \* 소 : {(처리기준면적~확보필요면적)-농가평균보유면적}×570원/평
  - \* 돼지·닭 : {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 완화두수(20~30%)}×두당소득×50%  
(단, 돼지·닭 : '04 지급 두당소득은 이행기간(8개월)을 반영하여 80% 지급)

### <인센티브 직불금>

- 조정수 구입비 50% 수준
  - 조정수 구입비×50%(구입단가 30천원/그루 이내)

## ○ 보조금 지급방식

- 대상농가당 기본직불금 1,300만원, 인센티브 200만원한도내에서 보조금 산정(지급상한액 : 1,500만원)
  - \* 지급상한 및 두당 처리기준면적 초과면적, 사육밀도 완화기준 초과 두수 등은 농가별 보조금 산정에서 제외
- 농가별 보조금은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전액 입금 처리
  - \* 농협, 우체국, 일반 금융기관에 입금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입금 처리

#### 다. 보조금 지급 및 정산

- 시장·군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보조금을 시·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조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한다
- 시장·군수는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계좌에 농가별로 보조금을 전액 입금 처리
-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, 해당 농업인은 향후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경영주의 보조금 이중·중복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
  - \* 회수조치된 보조금은 국고(농특회계)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한다

#### 라. 사업관리비 집행

- 시장·군수는 대상농가를 기준으로 호당 151천원 범위내에서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 참여농가의 이행여부 확인점검, 입간판 설치, 대상농가 대장관리, 농가교육비 등 소요비용으로 집행
  - 시장·군수는 관내 유관기관(기술센터, 농·축협 등)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동 사업관리비내에서 유관기관 점검비 집행 가능
- 시장·군수는 사업관리비 집행내역을 사업결과 보고서 포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

## 라. 보 고

- 시장·군수는 다음 사항을 [별지 제10호서식]에 의하여 시·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  - 지급대상 선정결과 보고 : 각 시행년도 5.15일까지
  -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: 각 사업시행 다음연도 1월말까지
- \* 시·도지사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잔액 정산 조치

## 8. 2005년도 사업(변경)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

\* 아래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시·군·구

나. 신청농가 : 2004년과 동일

다. 신청자격 : 2004년과 동일

라. 신청절차

-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,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·군에 제출

마. 구비서류

-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(변경)신청서
- 축산업등록증 등 친환경축산프로그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<참고 1>

## 축산업등록, 축산분뇨·소독시설 설치기준

### □ 축종별 등록대상 농가

| 구 분       | 한육우                     | 젓 소                     | 돼 지                    | 닭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등록농가규모  | 300m <sup>2</sup> (30두) | 300m <sup>2</sup> (30두) | 50m <sup>2</sup> (50두) | 300m <sup>2</sup> (3천수) |
| ○ 농가수(비율) | 9,856호(5.2%)            | 8,022(74.3)             | 9,288(60.0)            | 3,233(80.4)             |
| ○ 사육규모    | 657천두(44.9%)            | 478(90.8)               | 9,237(99.5)            | 91,262(95.1)            |

\* 희망시 등록대상 미만 농가도 등록 허용

### □ 축산폐수처리시설

(단위 : m<sup>2</sup>)

|          | 허 가 대 상  | 신 고 대 상   |
|----------|--|---|
| ○ 한육우    | 축사 900m <sup>2</sup> 이상<br>(수질보전지역 450m <sup>2</sup> 이상)   | 축사 100~900m <sup>2</sup> 미만<br>(수질보전지역 100~450m <sup>2</sup> 미만)  |
| ○ 젓 소    | 축사 900m <sup>2</sup> 이상 또는 운동장 2,700m <sup>2</sup> 이상<br>(수질보전지역 축사 450m <sup>2</sup> 이상 또는<br>운동장 1,350m <sup>2</sup> 이상) | 축사 100~900m <sup>2</sup> 미만 또는 운동장<br>300m <sup>2</sup> ~2,700m <sup>2</sup> 미만<br>(수질보전지역 축사 100~450m <sup>2</sup> 미만<br>또는 운동장 300m <sup>2</sup> ~1,350m <sup>2</sup> 미만) |
| ○ 돼 지    | 축사 1,000m <sup>2</sup> 이상<br>(수질보전지역 500m <sup>2</sup> 이상)   | 축사 50~1,000m <sup>2</sup> 미만<br>(수질보전지역 50~500m <sup>2</sup> 미만)  |
| ○ 닭·오리·양 | -  | 축사 150m <sup>2</sup> 이상   |

### □ 소독처리시설

| 설치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치시설 및 장비  | 설치장소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|
| ○ 가축사육시설<br>(300m <sup>2</sup> 이하 제외) | 출입차량(가축·사료·동물<br>약품·달걀·축산기자재·<br>가축분뇨 운송차량 및 동물<br>진료차량 등)의 바퀴, 사람의<br>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<br>및 차량용 소독약 살포시설 | 차량 출입구 | 사육시설의 출입구가<br>협소하여 소독약 살포<br>시설 설치가 어려운<br>경우에는 이동식 고압<br>세척 소독장비로 대체<br>가능 |

[별표 1]

## 축종별 기본요건 이행기준표

□ 소 : 조사료포 확보면적(분뇨처리기준)

|       | 처리기준면적<br>(A)              | 확보필요면적<br>(B=A*60%) | 농가평균보유면적<br>(C) | 추가확보예상면적<br>(D=B-C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· 한육우 | 622m <sup>2</sup> /두(188평) | 374(113)            | 291( 88)        | 83(25)              |
| · 젓 소 | 1,524(461)                 | 916(277)            | 651(197)        | 265(80)             |

\* 분뇨처리 기준면적은 초지, 논, 밭 모두 동일기준으로 적용

□ 돼지 : 사육형태별 면적(사육밀도 20%완화 기준)

|        | 일관경영 <sup>1)</sup>     | 번식경영 <sup>2)</sup> | 번식경영 <sup>3)</sup> | 비육경영 <sup>4)</sup> | 비육경영 <sup>5)</sup>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등록제(안) | 0.89m <sup>2</sup> /두  | 2.51               | 0.93               | 0.72               | 0.87               |
| 직불제(안) | 1.068m <sup>2</sup> /두 | 3.012              | 1.116              | 0.864              | 1.044              |

<sup>1)</sup> 일관경영 : 번식·분만·자돈·비육, <sup>2)</sup> 번식경영 : 번식·분만,

<sup>3)</sup> 번식경영 : 번식·분만·자돈, <sup>4)</sup> 비육경영 : 자돈·비육, <sup>5)</sup> 비육경영 : 비육

□ 닭 : 사육용도별 면적(사육밀도 20%완화 기준)

|     |         | 등록제(안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제(안) |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|         | 개 방                    | 무 창                    | 개 방    | 무 창    |
| 육 계 | 케이지     | 0.042m <sup>2</sup> /수 |                        | 0.0504 |        |
|     | 평 사     | 0.066m <sup>2</sup> /수 | 0.046m <sup>2</sup> /수 | 0.0792 | 0.0552 |
| 산란계 | 케이지     | 0.042m <sup>2</sup> /수 |                        | 0.0504 |        |
|     | 케이지(육성) | 0.025m <sup>2</sup> /수 |                        | 0.030  |        |
|     | 평 사     | 0.11m <sup>2</sup> /수  |                        | 0.132  |        |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(변경) 신청서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|--|
| ①신청인  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전화번호 |    |  |
|  | ②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③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| i )     |       | ii ) |      |    |  |
| ④축산업등록   | i )축종 :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ii)농장등록번호 :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경<br>영<br>현<br>황   | ⑤사육마리수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⑥가축사육시설(m <sup>2</sup> )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 | 종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축      | 자축 | 육성축 | 합계              | 적법축사                     | 비가림시설   | 기타    | 합계   |      |    |  |
|  | ⑦사육시설형태(m <sup>2</sup> )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i )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⑧경영형태 |      |      |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ii )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iii 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 | ⑨조사료포 확보면적(m <sup>2</sup> )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⑩축산분뇨처리시설(용량)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초지   | 사료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| 합계 | 퇴비화 |                 | 액비저장조                    | 정화처리시설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⑪분뇨처리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퇴비: i)판매( )톤/년 ii)자체사용( )톤 iii)위탁처리( )톤, iv)기타( 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액비: i)판매( )톤/년 ii)자체사용( )톤 iii)위탁처리( )톤, iv)기타( 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⑫소독시설 i)종류 : ii)장비 :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친<br>환<br>경<br>직<br>불<br>제<br>참<br>여<br>계<br>획   | ⑬참여형태 i)기본 프로그램( ) ii)인센티브( )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 | 2/4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3/4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/4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 | ⑭사육두수(마리)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 | 성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| 합계 | 성축  | 기타 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| 성축      | 기타    | 합계   |      |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⑮축사및분<br>뇨시설확보<br>(m <sup>2</sup> 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/4분기까지 |    |     | ⑯사료포등<br>확보(ha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/4분기까지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축사시설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초지      |       | 사료포  |      | 기타 |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⑰기타사항 i) 조경수 식재 : 그루, ii) 기 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⑱통장계좌번호 은행, 계좌번호 :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<p>본인은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니 사업 대상자로(변경)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변경신청의 경우)경영양도인 (서명 또는 날인)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| <p>① 입차(시설, 사료포 등) 계약서 사본 ② 초지조성허가증 사본 ③ 건축물대장</p> <p>④ 분뇨 처리시설인가 내용 ⑤ 가축사육시설 및 조사료포 약도 등 첨부</p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|  |

### <작성요령>

- ① 신청인 : 축사 및 가축을 소유하고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
- ② 주 소 : 신청인 주거주지
- ③ 사업장 : 신청인이 소유(임차 포함)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 소재지로 신청인 명의시설 모두 기재(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없음)
- ④ 축산업등록 : 축종(한육우, 젓소, 돼지, 산란계, 육계), 농장등록번호 기재
- ⑤ 사육마리수 : 신청당시 사육두수
- ⑥ 가축사육시설 :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 모두 표시, 적법축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면적, 축사를 임차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첨부
- ⑦ 사육시설형태 : 시설형태로 구분(예 : 계류식, 깔짚 등)
- ⑧ 경영형태(농가단위) : 번식, 비육, 일관 등 사육형태 구분
- ⑨ 조사료포 확보면적 : 신청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면적  
- 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서 첨부, 소유의 경우 토지대장 첨부
- ⑩ 축산분뇨 처리시설 : 처리방법별 처리용량 표시(허가기준)
- ⑪ 분뇨처리 : 연간 축산분뇨 처리 방법별 내역을 기재
- ⑫ 소독시설 : 소독시설 종류 및 시설장비 보유내역 기재
- ⑬ 참여형태 : 프로그램 참여형태를 ○, ×로 표시
- ⑭~⑯ 축종별 요건에 따라 이행계획 수립(6월말까지 요건 완료)
- ⑰ 기타사항 : 조정수 구입계획을 표시
- ⑱ 통장계좌번호 : 사업신청자 명의의 예금통장 및 계좌번호 기재



[별지 제2호 서식]

가축사육시설 및 조사료포 약도(예)

| 신청인    | 연락처 | (H·P) |  |
|--------|-----|-------|--|
| 소재지 :  |     | 소재지 : |  |
| <사육시설> |     | <사료포> |  |
| 소재지 :  |     | 소재지 : |  |
| <사육시설> |     | <사료포> |  |

[별지 제3호 서식]

2004년도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

축 종 : (경영형태 : 일관, 번식, 비육)

농장명 및 대표자 :

소재지 :      도      군      읍(면)      리      번지

연락처 : 주사업장      (휴대폰 :      )

## 1. 일반현황

|   | 참여당시           | 6월말 | 9월말 | 11월말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육마리수</li> <li>- 성축</li> <li>- 육성축</li> <li>- 자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마리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식 및 출하(누계)</li> <li>- 입식마리</li> <li>- 출하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육시설</li> <li>- 적법축사</li> <li>- 운동장 및 비가림</li> <li>- 기 타</li> </ul>                | m <sup>2</sup> |     |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사료포 면적</li> <li>- 자가소유</li> <li>- 임차확보</li> <li>- 계약이용(분뇨살포)</li> </ul>           | 평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뇨처리량</li> <li>- 자가소비량</li> <li>- 판매량</li> <li>- 위탁처리량</li> <li>- 기타공급량</li> </ul> | 톤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인·지도기관</li> <li>- 시장·군수</li> <li>- 농·축협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|

2. 친환경축산프로그램 이행기록

| 2004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요일      (날짜 :      ) |   |
|---|---|
| ①사육두수   | ○입식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출하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폐사:<br>- 입식 또는 출하처 :         |
| ②축산분뇨<br>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예) 축사바닥 및 운동장 청소, 깔짚교체<br>○   |
| ③축산분뇨<br>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반출량 : (퇴비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액비)<br>- 반출장소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반출처(연락처) : |
| ④사료작물<br>재배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<br>○  |
| ⑤질병예방<br>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소독 :<br>○예방접종 :<br>○기타 :   |
| ⑥교육 및<br>양축활동<br>등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⑦점검확인   | ○확인(점검)일 :<br>○확인(점검)자 :      소속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            |

## <작성요령>

### 1. 관리방법

- 매주 1회이상 작성하여야 함
- 축사, 사무실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
- 사업주관기관 및 점검기관의 열람요청시 제공하여야 함

### 2. 작성방법 : 당일 발생 기준

#### ① 가축의 이동내용(입식, 출하, 폐사)을 기록

예) 입식 : 자돈 100두(A종돈장, 전화번호), 출하 : 100두(B도축장, C가공업체),  
폐사 : 성축 3두(설사, 자체매몰)

#### ② 축산분뇨처리 관련 경영활동

예) 톱밥깔기 (평), 축산분뇨 처리 (톤), 방류검사 결과 등

#### ③ 퇴·액비화 된 축산분뇨의 활용내용

예) 퇴비 판매 톤(판매처, 연락처), 액비 공급 톤(공급처, 연락처)

#### ④ 사료작물재배와 관련된 활동

예) 경운 평, 시비량 Kg, 퇴·액비 살포량 톤(평), 수확 톤 등

#### ⑤ 질병예방활동 : 소독실시내용, 예방접종(종류, 수량, 구입처)

#### ⑥ 교육 및 양축활동 등 기타 : 환경, 방역관련 교육 이수사항(주관, 기간, 장소 등)과 기타 양축활동에서 발생된 사항 등 기록

#### ⑦ 확인(점검)자 : 시·군(지도기관), 축협 등 관계관의 점검일 등 기록



[별지 제5호 서식]

##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 농·초지 접수결과 통보

수신 ○○○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

- 우리 시·군·구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 접수결과 다음과 같이 귀 시·군·구 관할구역의 농·초지가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신청인 |        | 신청 농·초지(해당 시·군·구 관할)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성명  | 주민등록번호 | 농·초지 소재지             | 지번 | 면적(m <sup>2</sup> ) | 농·초지 소유자 | 재배사료 작물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
20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□□□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

[별지 제6호 서식]

**친환경축산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(변경) 확인결과**

○ 축종 :

| 농장<br>번호 | 참여<br>형태 | 주소<br>(번지)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주사업장<br>소재지 | 가축사육시설(㎡) |          |           | 사육<br>마리수<br>(두, 수) | 조사료포면적(ha) |           |    | 축산분뇨시설(용량) |    |           | 소독시설설치 |    | 비고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|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| 합계        | 적법<br>축사 | 무허가<br>축사 |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| 조사료<br>초지 | 합계 | 사료포<br>면적  | 합계 | 퇴비화<br>액비 | 정화조    | 종류 |    | 시설<br>장비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총합계        |    |        | 00명 신청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

- 참여형태 : 기본(Ⅰ), 기본+인센티브(Ⅱ) 기재
-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교란에 기재, 서식은 B4형으로 작성

200 년 월 일  
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



[별지 제7호 서식]

## 친환경축산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(변경) 통지서

1.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2004년도 친환경축산직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추 중 :

| 연번 | 성 명 | 주민등록번호 | 주 소 | 가축사육시설(m <sup>2</sup> ) |          |         | 사 육 마리수 | 조사료포 (ha) | 분뇨처리 시설(용량) | 소독시설 (종류·장비명) | 보조금 예상액(원) |
|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|     |        |     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| 적법축사 육 사 | 무허가 축 사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|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|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|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|     |        | 합 계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2.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말까지 시·군·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

시·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
리 〇〇〇 귀하

\*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통보할 때 농가별, 가축사육시설·조사료포 필지·분뇨처리시설·소독시설 등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

[별지 제8호 서식]

##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이행 점검결과 통지서

1. 성명(법인명) :
2.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:
3. 주소 :
4.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사항 점검결과

| 축종별 | 주사업장 소재지(위반사업장) | * 위반사항 | 지적내용 | 시정지시사항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

\* 위반사항 이행요건 준수사항 위반내용에 따라 공통, 축종별 등으로 구분

5. 시정지시사항 보완기간 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~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( 일)

귀하는 2004년도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대상자로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준수사항(공통, 축종별) 시정을 통지 하오니 통지일부부터 일이내에 시정하시기 바라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.

년    월    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

- ① 이 통지서에 따라 시정 지시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, 기한내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금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상실 하게 됩니다.
- ②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부터 20일이내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9호 서식]

##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통지서

1. 성명(법인명) :
2.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:
3. 주소 :
4.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사항 점검결과

| 회 수 | 축종별 | 주사업장 소재지(위반사업장) | * 위반사항 | 지적내용 | 시정지시사항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
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

\* 위반 회차별 내용을 작성하고 위반사항은 이행요건 준수사항 위반내용에 따라 공통, 축종별 등으로 구분

5. 시정 지시사항 보완기간 :    년   월   일 ~    년   월   일( 일)
6. 시정 지시사항 확인일 :    년   월   일

귀하는 2004년도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대상자로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합니다.

년   월   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

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10호 서식]

##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대상선정(보조금지급) 결과보고

축종 : 한육우(번식우, 비육우), 젖소, 돼지(번식돈, 비육돈), 산란계, 육계

| 참여<br>형태<br>(읍·면) | 신 청 현 황(*사업대상자 현황)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대상자 선정결과(*프로그램 이행결과)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지급<br>예정액<br>(*지급<br>액)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농가수<br>(호)         | 사육<br>두수<br>(두) | 사육시설(m <sup>2</sup> ) |        | 조사료포(ha) |    | 축분시설(용량) |     | 농가수<br>(호) | 사육<br>두수<br>(두) | 축사<br>면적<br>(m <sup>2</sup> ) | 조사료포(ha) |     | 축분시설(용량)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       | 적<br>범 | 무허가      | 합계 | 초 지      | 사료포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| 초 지 | 사료포      | 퇴비화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액비조<br>정화조 |
| 합계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※ 1ha = 10,000m<sup>2</sup>, 참여형태 : 기본(I), 기본+인센티브(II)으로 구분

- “\*” 표시된 란은 프로그램 이행결과 보고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농가수 등 현황과 지급금액을 기재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읍·면·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되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시·군·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200 년 월 일

보고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장·군수·구청장 (인)

시·도지사(농림부장관) 귀하

[별지 제11호 서식]

##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대장

| 축종<br>(참여<br>형태) | 주소<br>(번지) | 성명 | 주민등록<br>번호 | 주사업장<br>소재지 | 기축사육시설(m <sup>2</sup> ) |          |           | 사육<br>마리수<br>(두, 수) | 조사료포면적(ha) |    |     | 축산분뇨시설(용량) |     |    |     | 소독시설설치 |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| 적법<br>축사 | 무허가<br>축사 |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| 초지 | 사료포 | 합계         | 퇴비화 | 액비 | 정화조 | 종류     | 시설장비 |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|      |    |

- 축종학단에 참여 형태를 ( )내에 기재 : 기본(I), 기본+인센티브(II)
-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교란에 기재, 서식은 B4형으로 작성

### Ⅲ. 문 답 자 료



**문 1** | **친환경축산직불제란 ?**

-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이를 이행하고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감소 또는 추가비용을 지원 (호당 1,500만원 한도)하는 제도입니다.

**문 2** | **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?**

- 축산분뇨처리의 미흡, 각종 질병 발생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축산업을 환경오염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축산을 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
- 따라서,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가 시급합니다.
- 또한, DDA협상 동향 등을 감안하여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사업 추진으로 양축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*문 3** | **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신청자격은 ?**

-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신청자격은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신청전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

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<b>문 4</b> | <b>친환경축산 참여농가에 대하여 소득감소분의 50%만 지원하는 사유는 ?</b> |
|------------|---|

- 친환경축산 직불금은 농가의 친환경축산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
- 참여농가가 친환경 안전축산물을 생산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농가도 환경부하에 대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
- 또한, 사육밀도 완화 등에 따른 자가노력비 등 투입비용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.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<b>문 5</b> | <b>무허가 축사를 소유(임차)하고 있는 양축농가가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에 참여시 지원하게 되는가 ?</b> |
|------------|---|

- 무허가축사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미설치(적법한 축사에 대해서만 분뇨처리시설 허가)로 친환경축산과 정면 배치되고
-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적법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허가축사를 포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.
- 또한, 무허가시설에서 가축사육 등을 인정할 경우 이행요건 준수 여부 및 점검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, 적법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형평성,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도입취지 등에 배치되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다만, 무허가축사 보유농가가 사업참여시 무허가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.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문 6</b> | <b>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?</b>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친환경축산직불제는 기본프로그램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기본 프로그램은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 부대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며, 인센티브는 실적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.
- 축종별 기본요건으로는
  - (한육우·젓소) : 분뇨의 토양환원을 통한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를 위하여 일정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하고, 발생된 분뇨의 60%이상을 확보된 사료포에 환원
    - 확보면적 : 한육우 374m<sup>2</sup>/두(113평), 젓소 916m<sup>2</sup>(277평)
  - (돼지·닭) : 분뇨발생량을 20~30%수준 감축하기 위하여 등록제 기준 보다 사육밀도를 완화하고, 발생된 분뇨를 퇴·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
- 공통 부대요건(전축종 공통)은 주 1회이상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기장,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, 환경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- 또한 인센티브로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는 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조경수 구입비의 50%를 지원합니다.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<b>문 7</b> | <b>친환경축산직불제는 친환경축산농가 뿐만 아니라,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축산업등록농가에 그냥 지급하면 되지 않는가 ?</b> |
|------------|---|

-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은 WTO 농업협정상 허용 보조 (Green Box) 형태로 운영되어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고,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- WTO 농업협정상 환경보전 직불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친환경 프로그램을 제시하고, 동 프로그램 준수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.
- 친환경 직불금의 지원은 별도의 이행요건 없이 그냥 지원할 경우 도시 근로자와 형평성, 국민의 혈세 낭비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- \* 축산업 등록은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법적의무(당연히 해야 할 사항) 임

|     |   |
|-----|---|
| 문 8 | 소의 경우 조사료포 확보 필요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 참여농가 소유(임차 포함) 농지(사료포)가 쌀생산조정제, 마늘작목전환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? |
|-----|---|

- 축종별 지급요건중 소의 경우 조사료포는 처리기준면적의 60%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
- 확보면적중 쌀생산조정제, 마늘작목전환사업에 참여하여 직불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확보 필요면적에는 포함시키되,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대상면적에서는 제외합니다.
- 친환경축산직불금 산출은 지원을 받은 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대상면적을 산출합니다.
- 예를 들어, 한육우 50두를 사육하는 참여농가는 두당 113평 즉 5,650평 이상의 조사료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, 쌀생산조정제 등 정부 직불금지원을 받은 면적이 500평(전체면적의 8.8%)일 경우 지급 대상면적 1,250평중 8.8%에 해당하는 면적 110평을 제외한 직불보조금 지급규모는 1,140평을 지급 대상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액은 649,800원입니다.

**문 9**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?

-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도지사가 시장·군수의 신청을 받아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의 이행여건,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도내 전 시·군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참고로,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친환경축산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통한 본사업 시행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시범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.

**문10** 직불금 한도액을 농가당 1,500만원으로 제한하여 대규모 축산농가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?

- 친환경축산직불제 직불금 호당 상한선(1,500만원)을 설정한 이유는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
  - 대규모 농가의 경우 조사료포 확보 등 친환경 축산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스스로 친환경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경종분야의 직불금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.
  - 경종분야 : 친환경직불제 3,970천원(5ha)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논농업직불제 1,128천원(4ha)

|     |  |
|-----|--|
| 문11 | 사업 참여기간이 2년인데 금년에 선정된 시·군, 농가가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유지하게 되는지 ? |
|-----|--|

- 친환경축산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.
- 이에따라, 시범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친환경축산의 효과유지를 위해 금년에 선정된 농가는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며,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참여기간을 설정할 계획입니다.
- 다만, 시범사업 기간중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이에 맞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12 | 사업 참여기간중 준수사항 미이행농가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?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친환경축산 직불제 참여농가가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선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
- 향후 3년간 친환경축산 직불제 참여금지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게되며,
-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 부대요건을 위반한 농가는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감액지급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.

|     |   |
|-----|---|
| 문13 | <p>참여농가의 조사료포 확보면적에 분뇨를 환원할 경우 오분법에서 정한 액비기준면적과 차이가 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?</p> |
|-----|---|

- 기본적으로 축산분뇨의 처리는 오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.
- 다만, 친환경축산직불제에서 분뇨환원을 위한 조사료포 확보 면적을 오분법에서 정한 액비 기준면적보다 적게 설정한 것은 참여농가가 액비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고
- 농가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행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.
- 참여농가가 전량 조사료포에 분뇨를 환원할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적법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, 조사료포 확보 필요면적에 비례하여 축종별 처리기준면적을 상한으로 지원됩니다.

|     |   |
|-----|---|
| 문14 | <p>퇴·액비를 농지에 환원할 경우 처리량, 처리장소, 처리시기 등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?</p> |
|-----|---|

- 축산분뇨 발생량은 참여농가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축종별 배출원 단위 및 처리방법을 감안할 경우 일반적으로 퇴·액비의 생산량 추정이 가능하며, 농가의 기록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친환경축산축산 이행기록 장부에 농가가 처리량, 처리시기 등 이동경로를 기장하고 이를 점검기관이 확인합니다.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<b>문15</b> | <b>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가 자연재해, 가축질병,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?</b> |
|------------|---|

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행요건 준수가 어려울 경우 시장·군수가 일정기간(2개월 이내)을 정하여 이행요건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며, 이 경우 직불금 지급은 가능합니다.

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|
| <b>문16</b> | <b>조사료포 확보면적중 하급초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급초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?</b> |
|------------|--|

초지 사후관리권자인 시장·군수는 사료작물 생산량에 따라 초지 관리시 상·중·하급(25톤이하/ha)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어 하급초지 구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.

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|
| <b>문17</b> | <b>직불금 지급상한을 넘는 사육두수와 사료포면적 등은 관리할 필요는 없는지 ?</b> |
|------------|--|

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농가생산 시스템을 환경친화적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, 농가단위 참여 및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농장내에서 구분하여 참여할 경우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.

○ 따라서, 사업 참여농가는 전체 사육두수와 사료포 재배면적에 대하여 이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, 직불금 지급액은 전체 사육 시설과 재배면적에 대한 요건이행 여부를 확인후 지급됩니다.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<b>문18</b> | <b>인센티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경수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은 ?</b> |
|------------|---|

-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식재하는 조경수에 대한 수종, 수량, 방법 등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구입 및 식재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내 산림조합에서 구입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, 구입내용(영수증)을 보관하여야 확인, 지원이 가능합니다.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<b>문19</b> | <b>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의 조경수로 알맞는 수종과 심는 시기 및 방법은 ?</b> |
|------------|---|

- 전문기관(산림조합중앙회)에 문의한 결과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알맞는 수종은 상록수, 측백나무, 사철나무 등을 추천하고 있으나, 심는 지역, 장소 등 주변환경에 따라 적합한 수종을 해당 지역 산림조합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.
- 참고로, 조경수 식재방법, 적정수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([www.nfcf.or.kr](http://www.nfcf.or.kr)) “임업관련정보-나무자료실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|
| <b>문20</b> | <b>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의 출하전 항생제 투약 금지기간과 해당 항생제는 ?</b> |
|------------|--|

- 동물용 의약품의 동물체내 잔류방지를 위하여 “동물용의약품안전 사용기준”(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3-4호, '03. 7.26)을 운영하고 있으며, 동 기준에 따라 축종별, 항생제별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이행여부 확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작업장 잔류물질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.

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|---|
| <b>문21</b> | <b>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의 환경·방역관련 교육 이수기관과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은 ?</b> |
|------------|---|

-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참여농가는 의무적으로 환경·방역 관련교육을 4시간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새해 영농설계 교육, 친환경 축산관련 영농교육, 특별교육 등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과정은 모두 해당됩니다.
- 대상농가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하는 교육확인서 등을 점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농촌진흥청을 통하여 “친환경축산직불제 농업인 교육 시행지침”을 수립하여 시달할 계획입니다.

|     |  |
|-----|--|
| 문22 |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참여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을 매매(임대차)하거나 상속 등으로 재산권을 승계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과 방법은 ? |
|-----|--|

- 친환경축산직불제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축사 또는 가축 등을 매매, 상속, 임대차 등의 사유로 경영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재지 해당 시·군에 빠른 시일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변경신청시에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임차계약서 사본, 초지조성 허가증 사본 등 관련 첨부서류를 양수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합니다.
-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시점(매년 11월~12월)에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한 실 경영주에게 지급하게 되며, 시범사업 대상 시·군이 아닌 지역의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을 양수한 경우 관외 출입 경영농가 관리원칙에 따라 사업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
## IV. 직불금 조건표

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한육우>

(단위 : 두, m<sup>2</sup>, 천원)

| 사육두수 | 확보필요면적(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대상면적(평)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액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30   | 11,207~18,645<br>(3,390~5,640)       | 2,479~9,917<br>(750~3,000)        | 427.5~1,710         |
| 35   | 13,074~21,752<br>(3,955~6,580)       | 2,893~11,570<br>(875~3,500)       | 498.7~1,995         |
| 40   | 14,942~24,860<br>(4,520~7,520)       | 3,306~13,223<br>(1,000~4,000)     | 570.0~2,280         |
| 45   | 16,810~27,967<br>(5,085~8,460)       | 3,719~14,876<br>(1,125~4,500)     | 641.2~2,565         |
| 50   | 18,678~31,075<br>(5,650~9,400)       | 4,132~16,529<br>(1,250~5,000)     | 712.5~2,850         |
| 55   | 20,546~34,182<br>(6,215~10,340)      | 4,545~18,182<br>(1,375~5,500)     | 783.7~3,135         |
| 60   | 22,413~37,289<br>(6,780~11,280)      | 4,959~19,835<br>(1,500~6,000)     | 855.0~3,420         |
| 65   | 24,281~40,397<br>(7,345~12,220)      | 5,372~21,488<br>(1,625~6,500)     | 926.2~3,705         |
| 70   | 26,149~43,504<br>(7,910~13,160)      | 5,785~23,141<br>(1,750~7,000)     | 997.5~3,990         |
| 75   | 28,017~46,612<br>(8,475~14,100)      | 6,198~24,794<br>(1,875~7,500)     | 1,068.7~4,275       |
| 80   | 29,884~49,719<br>(9,040~15,040)      | 6,612~26,446<br>(2,000~8,000)     | 1,140.0~4,560       |
| 85   | 31,752~52,827<br>(9,605~15,980)      | 7,025~28,099<br>(2,125~8,500)     | 1,211.2~4,845       |
| 90   | 33,620~55,934<br>(10,170~16,920)     | 7,438~29,752<br>(2,250~9,000)     | 1,282.5~5,130       |
| 95   | 35,488~59,042<br>(10,735~17,860)     | 7,851~31,405<br>(2,375~9,500)     | 1,353.7~5,415       |
| 100  | 37,356~62,149<br>(11,300~18,800)     | 8,265~33,058<br>(2,500~10,000)    | 1,425.0~5,700       |
| 229  | 85,544~142,321<br>(25,877~43,052)    | 18,926~75,703<br>(5,725~22,900)   | 3,263.2~(13,053)    |
| 913  | 341,056~567,421<br>(103,169~171,644) | 75,455~301,820<br>(22,825~91,300) | (13,010.2)~(52,041) |

\* 도량형 환산기준 : 1m<sup>2</sup>=0.3025평, 1평=3.3058m<sup>2</sup>, 1ha=10,000m<sup>2</sup>(3,025평)

\* 지급액 산출방법 : ((처리기준면적~확보필요면적)-농가평균보유면적)×570원/3.3m<sup>2</sup>  
· 처리기준면적 622m<sup>2</sup>/두(188평/두), 확보필요면적 374(113), 농가평균보유면적 291(88)

\* 직불금 지급액 산출결과 100원단위 미만은 절사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젓 소>

(단위 : 두, m<sup>2</sup>, 천원)

| 사육두수 | 확보필요면적(평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대상면적(평)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액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30   | 27,471~45,719<br>(8,310~13,830)     | 7,934~26,182<br>(2,400~7,920)     | 1,368.0~4,514.4     |
| 35   | 32,050~53,339<br>(9,695~16,135)     | 9,256~30,546<br>(2,800~9,240)     | 1,596.0~5,266.8     |
| 40   | 36,628~60,959<br>(11,080~18,440)    | 10,579~34,909<br>(3,200~10,560)   | 1,824.0~6,019.2     |
| 45   | 41,207~68,579<br>(12,465~20,745)    | 11,901~39,273<br>(3,600~11,880)   | 2,052.0~6,771.6     |
| 50   | 45,785~76,199<br>(13,850~23,050)    | 13,223~43,637<br>(4,000~13,200)   | 2,280.0~7,524.0     |
| 55   | 50,364~83,819<br>(15,235~25,355)    | 14,546~48,000<br>(4,400~14,520)   | 2,508.0~8,276.4     |
| 60   | 54,942~91,438<br>(16,620~27,660)    | 15,868~52,364<br>(4,800~15,840)   | 2,736.0~9,028.8     |
| 65   | 59,521~99,058<br>(18,005~29,965)    | 17,190~56,728<br>(5,200~17,160)   | 2,964.0~9,781.2     |
| 70   | 64,100~106,678<br>(19,390~32,270)   | 18,512~61,091<br>(5,600~18,480)   | 3,192.0~10,941.2    |
| 75   | 68,678~114,298<br>(20,775~34,575)   | 19,835~65,455<br>(6,000~19,800)   | 3,420.0~11,286.0    |
| 80   | 73,256~121,918<br>(22,160~36,880)   | 21,157~69,819<br>(6,400~21,120)   | 3,648.0~12,038.4    |
| 85   | 77,835~129,538<br>(23,545~39,185)   | 22,479~74,182<br>(6,800~22,440)   | 3,876.0~12,790.8    |
| 86   | 78,751~131,062<br>(23,822~39,646)   | 22,744~75,055<br>(6,880~22,704)   | 3,921.6~12,941.2    |
| 90   | 82,414~137,158<br>(24,930~41,490)   | 23,802~78,546<br>(7,200~23,760)   | 4,104.0~(13,543.2)  |
| 95   | 86,992~144,778<br>(26,315~43,795)   | 25,124~82,910<br>(7,600~25,080)   | 4,332.0~(14,295.6)  |
| 100  | 91,571~152,397<br>(27,700~46,100)   | 26,446~87,273<br>(8,000~26,400)   | 4,560.0~(15,048.0)  |
| 285  | 185,604~434,333<br>(56,145~131,385) | 75,372~248,728<br>(22,800~75,240) | 12,996.0~(42,886.8) |

- \* 도량형 환산기준 : 1m<sup>2</sup>=0.3025평, 1평=3.3058m<sup>2</sup>, 1ha=10,000m<sup>2</sup>(3,025평)
- \* 지급액 산출방법 : {(처리기준면적~확보필요면적)-농가평균보유면적}×570원/3.3m<sup>2</sup>  
 · 처리기준면적 1,524m<sup>2</sup>/두(461평/두), 확보필요면적 916(277), 농가평균보유면적 651(197)
- \* 직불금 지급액 산출결과 100원단위 미만은 절사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돼지> 일관경영 : 번식·분만·자돈·비육

(단위 : m<sup>2</sup>, 두, 천원)

| 측사면적<br>(A) | 적정 사육두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액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0.89) | 직불제<br>(C=A/1.068~1.157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20천원) |
| 50          | 56                | 43~46                    | 10~13           | 200~260           |
| 100         | 112               | 86~93                    | 19~26           | 380~520           |
| 150         | 168               | 129~140                  | 28~39           | 560~780           |
| 200         | 224               | 172~187                  | 37~52           | 740~1,040         |
| 250         | 280               | 216~234                  | 46~64           | 920~1,280         |
| 300         | 337               | 259~280                  | 57~78           | 1,140~1,560       |
| 350         | 393               | 302~327                  | 66~91           | 1,320~1,820       |
| 400         | 449               | 345~374                  | 75~104          | 1,500~2,080       |
| 450         | 505               | 388~421                  | 84~117          | 1,680~2,340       |
| 500         | 561               | 432~468                  | 93~129          | 1,860~2,580       |
| 550         | 617               | 475~514                  | 103~142         | 2,060~2,840       |
| 600         | 674               | 518~561                  | 113~156         | 2,260~3,120       |
| 650         | 730               | 561~608                  | 122~169         | 2,440~3,380       |
| 700         | 786               | 605~655                  | 131~181         | 2,620~3,620       |
| 750         | 842               | 648~702                  | 140~194         | 2,800~3,880       |
| 800         | 898               | 691~749                  | 149~207         | 2,980~4,140       |
| 850         | 955               | 734~795                  | 160~221         | 3,200~4,420       |
| 900         | 1,011             | 777~842                  | 169~234         | 3,380~4,680       |
| 950         | 1,067             | 821~889                  | 178~246         | 3,560~4,920       |
| 1,000       | 1,123             | 864~936                  | 187~259         | 3,740~5,180       |
| 2,506       | 2,815             | 2,165~2,346              | 469~650         | 9,380~13,000      |
| 3,471       | 3,900             | 3,000~3,250              | 650~900         | 13,000~(18,000)   |

\* 두당 사육면적 : 등록제 0.89m<sup>2</sup>/두, 직불제 1.068~1.157m<sup>2</sup>/두

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두당소득(40천원)×50%  
· 사육밀도 = 측사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두당면적

\* 적정 사육두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돼지> 비육경영 : 비육

(단위 : m<sup>2</sup>, 두, 천원)

| 축사면적<br>(A) | 적정 사육두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규모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0.87) | 직불제<br>(C=A/1.044~1.131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20천원) |
| 50          | 57                | 44~47                    | 10~13           | 200~260           |
| 100         | 114               | 88~95                    | 19~26           | 380~520           |
| 150         | 172               | 132~143                  | 29~40           | 580~800           |
| 200         | 229               | 176~191                  | 38~53           | 760~1,060         |
| 250         | 287               | 221~239                  | 48~66           | 960~1,320         |
| 300         | 344               | 265~287                  | 57~79           | 1,140~1,580       |
| 350         | 402               | 309~335                  | 67~93           | 1,340~1,860       |
| 400         | 459               | 353~383                  | 76~106          | 1,520~2,120       |
| 450         | 517               | 397~431                  | 86~120          | 1,720~2,400       |
| 500         | 574               | 442~478                  | 96~132          | 1,920~2,640       |
| 550         | 632               | 486~526                  | 106~146         | 2,120~2,920       |
| 600         | 689               | 530~574                  | 115~159         | 2,300~3,180       |
| 650         | 747               | 574~622                  | 125~173         | 2,500~3,460       |
| 700         | 804               | 618~670                  | 134~186         | 2,680~3,720       |
| 750         | 862               | 663~718                  | 144~199         | 2,880~3,980       |
| 800         | 919               | 707~766                  | 153~212         | 3,060~4,240       |
| 850         | 977               | 751~814                  | 163~226         | 3,260~4,520       |
| 900         | 1,034             | 795~862                  | 172~239         | 3,440~4,780       |
| 950         | 1,091             | 839~909                  | 182~252         | 3,640~5,040       |
| 1,000       | 1,149             | 884~957                  | 192~265         | 3,840~5,300       |
| 2,450       | 2,816             | 2,166~2,346              | 470~650         | 9,400~13,000      |
| 3,393       | 3,900             | 3,000~3,250              | 650~900         | 13,000~(18,000)   |

\* 두당 사육면적 : 등록제 0.87m<sup>2</sup>/두, 직불제 1.044~1.131m<sup>2</sup>/두

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두당소득(40천원)×50%

· 사육밀도 = 축사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두당면적

\* 적정 사육두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돼지> 번식경영 : 번식·분만

(단위 : m<sup>2</sup>, 두, 천원)

| 축사면적<br>(A) | 적정 사육두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규모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2.51) | 직불제<br>(C=A/3.012~3.263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20천원) |
| 50          | 19                | 15~16                    | 3~4             | 60~80             |
| 100         | 39                | 30~33                    | 6~9             | 120~180           |
| 200         | 79                | 61~66                    | 13~18           | 260~360           |
| 400         | 159               | 122~132                  | 27~37           | 540~740           |
| 600         | 239               | 183~199                  | 40~56           | 800~1,120         |
| 800         | 318               | 245~265                  | 53~73           | 1,060~1,460       |
| 1,000       | 398               | 306~332                  | 66~92           | 1,320~1,840       |
| 1,200       | 478               | 367~398                  | 80~111          | 1,600~2,220       |
| 1,400       | 557               | 429~464                  | 93~128          | 1,860~2,560       |
| 1,600       | 637               | 490~531                  | 106~147         | 2,120~2,940       |
| 1,800       | 717               | 551~597                  | 120~166         | 2,400~3,320       |
| 2,000       | 796               | 612~664                  | 132~184         | 2,640~3,680       |
| 2,500       | 996               | 766~830                  | 166~230         | 3,320~4,600       |
| 3,000       | 1,195             | 919~996                  | 199~276         | 3,980~5,520       |
| 3,500       | 1,394             | 1,072~1,162              | 232~322         | 4,640~6,440       |
| 4,000       | 1,593             | 1,225~1,328              | 265~368         | 5,300~7,360       |
| 4,500       | 1,792             | 1,379~1,494              | 298~413         | 5,960~8,260       |
| 5,000       | 1,992             | 1,532~1,660              | 332~460         | 6,640~9,200       |
| 5,500       | 2,191             | 1,685~1,826              | 365~506         | 7,300~10,120      |
| 6,000       | 2,390             | 1,838~1,992              | 398~552         | 7,960~11,040      |
| 7,078       | 2,819             | 2,169~2,349              | 470~650         | 9,400~13,000      |
| 9,803       | 3,905             | 3,004~3,254              | 651~901         | (13,020)~(18,020) |

\* 두당 사육면적 : 등록제 2.51m<sup>2</sup>/두, 직불제 3.012~3.263m<sup>2</sup>/두

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두당소득(40천원)×50%

· 사육밀도 = 축사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두당면적

\* 적정 사육두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돼지> 번식경영 : 번식·분만·자돈

(단위 : m<sup>2</sup>, 두, 천원)

| 축사면적<br>(A) | 적정 사육두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규모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0.93) | 직불제<br>(C=A/1.116~1.209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20천원) |
| 50          | 53                | 41~44                    | 9~12            | 180~240           |
| 100         | 107               | 82~89                    | 18~25           | 360~500           |
| 150         | 161               | 124~134                  | 27~37           | 540~740           |
| 200         | 215               | 165~179                  | 36~50           | 720~1,000         |
| 250         | 268               | 206~224                  | 44~62           | 880~1,240         |
| 300         | 322               | 248~268                  | 54~74           | 1,080~1,480       |
| 350         | 376               | 289~313                  | 63~87           | 1,260~1,740       |
| 400         | 430               | 330~358                  | 70~100          | 1,440~2,000       |
| 450         | 483               | 372~403                  | 80~111          | 1,600~2,220       |
| 500         | 537               | 413~448                  | 89~124          | 1,780~2,480       |
| 600         | 645               | 496~537                  | 108~149         | 2,160~2,980       |
| 700         | 752               | 578~627                  | 125~174         | 2,500~3,480       |
| 800         | 860               | 661~716                  | 144~199         | 2,880~3,980       |
| 900         | 967               | 744~806                  | 161~223         | 3,220~4,460       |
| 1,000       | 1,075             | 827~896                  | 179~248         | 3,580~4,960       |
| 1,200       | 1,290             | 992~1,075                | 215~298         | 4,300~5,960       |
| 1,400       | 1,505             | 1,157~1,254              | 251~348         | 5,020~6,960       |
| 1,600       | 1,720             | 1,323~1,433              | 287~397         | 5,740~7,940       |
| 1,800       | 1,935             | 1,488~1,612              | 323~447         | 6,460~8,940       |
| 2,016       | 2,167             | 1,667~1,806              | 361~500         | 7,220~10,000      |
| 2,621       | 2,818             | 2,167~2,348              | 470~651         | 9,400~(13,020)    |
| 3,627       | 3,900             | 3,000~3,250              | 650~900         | 13,000~(18,000)   |

- \* 두당 사육면적 : 등록제 0.93m<sup>2</sup>/두, 직불제 1.116~1.209m<sup>2</sup>/두
- 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두당소득(40천원)×50%  
· 사육밀도 = 축사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두당면적
- \* 적정 사육두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돼지> 비육경영 : 자돈 · 비육

(단위 : m<sup>2</sup>, 두, 천원)

| 축사면적<br>(A) | 적정 사육두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규모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0.72) | 직불제<br>(C=A/0.864~0.936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20천원) |
| 50          | 69                | 53~57                    | 12~16           | 240~320           |
| 100         | 138               | 106~115                  | 23~32           | 460~640           |
| 150         | 208               | 160~173                  | 35~48           | 700~960           |
| 200         | 277               | 213~231                  | 46~64           | 920~1,280         |
| 250         | 347               | 267~289                  | 58~80           | 1,160~1,600       |
| 300         | 416               | 320~347                  | 69~96           | 1,380~1,920       |
| 350         | 486               | 373~405                  | 81~113          | 1,620~2,260       |
| 400         | 555               | 427~462                  | 93~128          | 1,860~2,560       |
| 450         | 625               | 480~520                  | 105~145         | 2,100~2,900       |
| 500         | 694               | 534~578                  | 116~160         | 2,320~3,200       |
| 600         | 833               | 641~694                  | 139~192         | 2,780~3,840       |
| 700         | 972               | 747~810                  | 162~225         | 3,240~4,500       |
| 800         | 1,111             | 854~925                  | 186~257         | 3,720~5,140       |
| 900         | 1,250             | 961~1,041                | 209~289         | 4,180~5,780       |
| 1,000       | 1,388             | 1,068~1,157              | 231~320         | 4,620~6,400       |
| 1,200       | 1,666             | 1,282~1,388              | 278~384         | 5,560~7,680       |
| 1,400       | 1,944             | 1,495~1,620              | 324~449         | 6,480~8,980       |
| 1,559       | 2,165             | 1,665~1,804              | 361~500         | 7,220~10,000      |
| 1,600       | 2,222             | 1,709~1,851              | 371~513         | 7,420~10,260      |
| 1,800       | 2,500             | 1,923~2,083              | 417~577         | 8,340~11,540      |
| 2,027       | 2,815             | 2,165~2,346              | 469~650         | 9,380~13,000      |
| 2,808       | 3,900             | 3,000~3,250              | 650~900         | 13,000~(18,000)   |

\* 두당 사육면적 : 등록제 0.72m<sup>2</sup>/두, 직불제 0.864~0.936m<sup>2</sup>/두

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두당소득(40천원)×50%

· 사육밀도 = 축사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두당면적

\* 적정 사육두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답> 육계·산란계 : 케이지

(단위 : m<sup>2</sup>, 수, 천원)

| 케이지<br>면적<br>(A) | 적정 사육두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규모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0.042) | 직불제<br>(C=A/0.0504~0.0546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0.6천원)    |
| 300              | 7,142              | 5,494~5,952                | 1,190~1,648     | 714.0~988.8           |
| 350              | 8,333              | 6,410~6,944                | 1,389~1,923     | 833.4~1,153.8         |
| 400              | 9,523              | 7,326~7,936                | 1,587~2,197     | 952.2~1,318.2         |
| 450              | 10,714             | 8,241~8,928                | 1,786~2,473     | 1,071.6~1,483.8       |
| 500              | 11,904             | 9,157~9,920                | 1,984~2,747     | 1,190.4~1,648.2       |
| 600              | 14,285             | 10,989~11,904              | 2,381~3,296     | 1,428.6~1,977.6       |
| 700              | 16,666             | 12,820~13,888              | 2,778~3,846     | 1,666.8~2,307.6       |
| 800              | 19,047             | 14,652~15,873              | 3,174~4,395     | 1,904.4~2,637.0       |
| 900              | 21,428             | 16,483~17,857              | 3,571~4,945     | 2,142.6~2,967.0       |
| 1,000            | 23,809             | 18,315~19,841              | 3,968~5,494     | 2,380.8~3,296.4       |
| 1,200            | 28,571             | 21,978~23,809              | 4,762~6,593     | 2,857.2~3,955.8       |
| 1,400            | 33,333             | 25,641~27,777              | 5,556~7,692     | 3,333.6~4,615.2       |
| 1,600            | 38,095             | 29,304~31,746              | 6,349~8,791     | 3,809.4~5,274.6       |
| 1,800            | 42,857             | 32,967~35,714              | 7,143~9,890     | 4,285.8~5,934.0       |
| 2,000            | 47,619             | 36,630~39,682              | 7,937~10,989    | 4,762.2~6,593.4       |
| 2,500            | 59,523             | 45,787~49,603              | 9,920~13,736    | 5,952.0~8,241.6       |
| 3,000            | 71,428             | 54,945~59,523              | 11,905~16,483   | 7,143.0~9,889.8       |
| 3,034            | 72,238             | 55,567~60,198              | 12,040~16,671   | 7,224.0~10,002.6      |
| 3,500            | 83,333             | 64,102~69,444              | 13,889~19,231   | 8,333.4~11,538.6      |
| 3,944            | 93,904             | 72,234~78,253              | 15,651~21,670   | 9,390.6~(13,002.0)    |
| 5,460            | 130,000            | 10,000~108,333             | 21,667~30,000   | (13,000.2)~(18,000.0) |

\* 수당 사육면적 : 등록제 0.042m<sup>2</sup>/수, 직불제 0.0504~0.0546m<sup>2</sup>/수

\* 케이지 면적 : 케이지 바닥면적 총 합계임

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수당소득(1.2천원)×50%

· 사육밀도 = 케이지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수당면적

\* 적정 사육두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답> 육계 : 평사(개방)

(단위 : m<sup>2</sup>, 두, 천원)

| 축사면적<br>(A) | 적정 사육수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규모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0.066) | 직불제<br>(C=A/0.0792~0.0858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0.6천원)    |
| 300         | 4,545              | 3,496~3,787                | 758~1,049       | 454.8~629.4           |
| 350         | 5,303              | 4,079~4,419                | 884~1,224       | 530.4~734.4           |
| 400         | 6,060              | 4,662~5,050                | 1,010~1,398     | 606.0~838.8           |
| 450         | 6,818              | 5,244~5,681                | 1,137~1,574     | 682.2~944.4           |
| 500         | 7,575              | 5,827~6,313                | 1,262~1,748     | 757.2~1,048.8         |
| 600         | 9,090              | 6,993~7,575                | 1,515~2,097     | 909.0~1,258.2         |
| 700         | 10,606             | 8,158~8,838                | 1,768~2,448     | 1,060.8~1,468.8       |
| 800         | 12,121             | 9,324~10,101               | 2,020~2,797     | 1,212.0~1,678.2       |
| 900         | 13,636             | 10,489~11,363              | 2,273~3,147     | 1,363.8~1,888.2       |
| 1,000       | 15,151             | 11,655~12,626              | 2,525~3,496     | 1,515.0~2,097.6       |
| 1,200       | 18,181             | 13,986~15,151              | 3,030~4,195     | 1,818.0~2,517.0       |
| 1,400       | 21,212             | 16,317~17,676              | 3,536~4,895     | 2,121.6~2,937.0       |
| 1,600       | 24,242             | 18,648~20,202              | 4,040~5,594     | 2,424.0~3,356.4       |
| 1,800       | 27,272             | 20,979~22,727              | 4,545~6,293     | 2,727.0~3,775.8       |
| 2,000       | 30,303             | 23,310~25,252              | 5,051~6,993     | 3,030.6~4,195.8       |
| 2,500       | 37,878             | 29,137~31,565              | 6,313~8,741     | 3,787.8~5,244.6       |
| 3,000       | 45,454             | 34,965~37,878              | 7,576~10,489    | 4,545.6~6,293.4       |
| 3,500       | 53,030             | 40,792~44,191              | 8,839~12,238    | 5,303.4~7,342.8       |
| 4,000       | 60,606             | 46,620~50,505              | 10,101~13,986   | 6,060.6~8,391.6       |
| 6,197       | 93,893             | 72,226~78,244              | 15,649~21,667   | 9,389.4~(13,000.2)    |
| 8,580       | 130,000            | 100,000~108,333            | 21,667~30,000   | (13,000.2)~(18,000.0) |

\* 수당 사육면적 : 등록제 0.066m<sup>2</sup>/수, 직불제 0.0792~0.0858m<sup>2</sup>/수

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수당소득(1.2천원)×50%

· 사육밀도 = 축사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수당면적

\* 적정 사육수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답> 육계 : 평사(무창)

(단위 : m<sup>2</sup>, 두, 천원)

| 축사면적<br>(A) | 적정 사육수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규모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0.046) | 직불제<br>(C=A/0.0552~0.0598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0.6천원)    |
| 300         | 6,521              | 5,016~5,434                | 1,087~1,505     | 652.2~903.0           |
| 350         | 7,608              | 5,852~6,340                | 1,268~1,756     | 760.8~1,053.6         |
| 400         | 8,695              | 6,688~7,246                | 1,449~2,007     | 869.4~1,204.2         |
| 450         | 9,782              | 7,525~8,152                | 1,630~2,257     | 978.0~1,354.2         |
| 500         | 10,869             | 8,361~9,057                | 1,812~2,508     | 1,087.2~1,504.8       |
| 600         | 13,043             | 10,033~10,869              | 2,174~3,010     | 1,304.4~1,806.0       |
| 700         | 15,217             | 11,705~12,681              | 2,536~3,512     | 1,521.6~2,107.2       |
| 800         | 17,391             | 13,377~14,492              | 2,899~4,014     | 1,739.4~2,408.4       |
| 900         | 19,565             | 15,050~16,304              | 3,261~4,515     | 1,956.6~2,709.0       |
| 1,000       | 21,739             | 16,722~18,115              | 3,624~5,017     | 2,174.4~3,010.2       |
| 1,200       | 26,086             | 20,066~21,739              | 4,347~6,020     | 2,608.2~3,612.0       |
| 1,400       | 30,434             | 23,411~25,362              | 5,072~7,023     | 3,043.2~4,213.8       |
| 1,600       | 34,782             | 26,755~28,985              | 5,797~8,027     | 3,478.2~4,816.2       |
| 1,800       | 39,130             | 30,100~32,608              | 6,522~9,030     | 3,913.2~5,418.0       |
| 2,000       | 43,478             | 33,444~36,231              | 7,247~10,034    | 4,348.2~6,020.4       |
| 2,500       | 54,347             | 41,806~45,289              | 9,058~12,541    | 5,434.8~7,524.6       |
| 3,000       | 65,217             | 50,167~54,347              | 10,870~15,050   | 6,522.0~9,030.0       |
| 3,323       | 72,239             | 55,568~60,197              | 12,040~16,671   | 7,224.0~10,002.6      |
| 3,500       | 76,086             | 58,528~63,405              | 12,681~17,558   | 7,608.6~10,534.8      |
| 4,319       | 93,891             | 72,224~78,242              | 15,649~21,667   | 9,389.4~(13,000.2)    |
| 5,980       | 130,000            | 100,000~108,333            | 21,667~30,000   | (13,000.2)~(18,000.0) |

\* 수당 사육면적 : 등록제 0.046m<sup>2</sup>/수, 직불제 0.0552~0.0598m<sup>2</sup>/수

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수당소득(1.2천원)×50%

· 사육밀도 = 축사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수당면적

\* 적정 사육수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답> 산란계 : 케이지(육성)

(단위 : m<sup>2</sup>, 수, 천원)

| 축사면적<br>(A) | 적정 사육수수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규모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0.025) | 직불제<br>(C=A/0.030~0.0325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0.6천원)    |
| 300         | 12,000             | 9,230~10,000              | 2,000~2,770     | 1,200.0~1,662.0       |
| 350         | 14,000             | 10,769~11,666             | 2,334~3,231     | 1,400.4~1,938.6       |
| 400         | 16,000             | 12,307~13,333             | 2,667~3,693     | 1,600.2~2,215.8       |
| 450         | 18,000             | 13,846~15,000             | 3,000~4,154     | 1,800.0~2,492.4       |
| 500         | 20,000             | 15,384~16,666             | 3,334~4,616     | 2,000.4~2,769.6       |
| 600         | 24,000             | 18,461~20,000             | 4,000~5,539     | 2,400.0~3,323.4       |
| 700         | 28,000             | 21,538~23,333             | 4,667~6,462     | 2,800.2~3,877.2       |
| 800         | 32,000             | 24,615~26,666             | 5,334~7,385     | 3,200.4~4,431.0       |
| 900         | 36,000             | 27,692~30,000             | 6,000~8,308     | 3,600.0~4,984.8       |
| 1,000       | 40,000             | 30,769~33,333             | 6,667~9,231     | 4,000.2~5,538.6       |
| 1,100       | 44,000             | 33,846~36,666             | 7,334~10,154    | 4,400.4~6,092.4       |
| 1,200       | 48,000             | 36,923~40,000             | 8,000~11,077    | 4,800.0~6,646.4       |
| 1,300       | 52,000             | 40,000~43,333             | 8,667~12,000    | 5,200.2~7,200.0       |
| 1,400       | 56,000             | 43,076~46,666             | 9,334~12,924    | 5,600.4~7,754.4       |
| 1,500       | 60,000             | 46,153~50,000             | 10,000~13,847   | 6,000.0~8,308.2       |
| 1,700       | 68,000             | 52,307~56,666             | 11,334~15,693   | 6,800.4~9,415.8       |
| 1,806       | 72,240             | 55,569~60,200             | 12,040~16,671   | 7,224.0~10,002.6      |
| 1,900       | 76,000             | 58,461~63,333             | 12,667~17,539   | 7,600.2~10,523.4      |
| 2,100       | 84,000             | 64,615~70,000             | 14,000~19,385   | 8,400.0~11,631.0      |
| 2,347       | 93,880             | 72,215~78,233             | 15,647~21,665   | 9,388.2~12,999.0      |
| 3,250       | 130,000            | 100,000~108,333           | 21,667~30,000   | (13,000.2)~(18,000.0) |

\* 수당 사육면적 : 등록제 0.025m<sup>2</sup>/수, 직불제 0.030~0.0325m<sup>2</sup>/수

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수당소득(1.2천원)×50%

· 사육밀도 = 축사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수당면적

\* 적정 사육수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

## 친환경축산직불보조금 지급조건표

<답> 산란계 : 평사

(단위 : m<sup>2</sup>, 수, 천원)

| 축사면적<br>(A) | 적정 사육수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불금 지급규모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등록제<br>(B=A/0.11) | 직불제<br>(C=A/0.132~0.143) | 지급두수<br>(D=B-C) | 지급액<br>(E=D×0.6천원)    |
| 300         | 2,727             | 2,097~2,272              | 455~630         | 273.0~378.0           |
| 350         | 3,181             | 2,447~2,651              | 530~734         | 318.0~440.4           |
| 400         | 3,636             | 2,797~3,030              | 606~839         | 363.6~503.4           |
| 450         | 4,090             | 3,146~3,409              | 681~944         | 408.6~566.4           |
| 500         | 4,545             | 3,496~3,787              | 758~1,049       | 454.8~629.4           |
| 600         | 5,454             | 4,195~4,545              | 909~1,259       | 545.4~755.4           |
| 700         | 6,363             | 4,895~5,303              | 1,060~1,468     | 636.0~880.8           |
| 800         | 7,272             | 5,594~6,060              | 1,212~1,678     | 727.2~1,006.8         |
| 900         | 8,181             | 6,293~6,818              | 1,363~1,888     | 817.8~1,132.8         |
| 1,000       | 9,090             | 6,993~7,575              | 1,515~2,097     | 909.0~1,258.2         |
| 2,000       | 18,181            | 13,986~15,151            | 3,030~4,195     | 1,818.0~2,517.0       |
| 3,000       | 27,272            | 20,979~22,727            | 4,545~6,293     | 2,727.0~3,775.8       |
| 4,000       | 36,363            | 27,972~30,303            | 6,060~8,391     | 3,636.0~5,034.6       |
| 5,000       | 45,454            | 34,965~37,878            | 7,576~10,489    | 4,545.6~6,293.4       |
| 6,000       | 54,545            | 41,958~45,454            | 9,091~12,587    | 5,454.6~7,552.2       |
| 7,000       | 63,636            | 48,951~53,030            | 10,606~14,685   | 6,363.6~8,811.0       |
| 7,947       | 72,245            | 55,573~60,204            | 12,041~16,672   | 7,224.6~10,003.2      |
| 8,000       | 72,727            | 55,944~60,606            | 12,121~16,783   | 7,272.6~10,069.8      |
| 9,000       | 81,818            | 62,937~68,181            | 13,637~18,881   | 8,182.2~11,328.6      |
| 10,327      | 93,881            | 72,216~78,234            | 15,647~21,665   | 9,388.2~12,999.0      |
| 14,300      | 130,000           | 100,000~108,333          | 21,667~30,000   | (13,000.2)~(18,000.0) |

- \* 수당 사육면적 : 등록제 0.11m<sup>2</sup>/수, 직불제 0.132~0.143m<sup>2</sup>/수
- \* 지급액 산출방법 :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(20~30%)×수당소득(1.2천원)×50%
  - 사육밀도 = 축사면적÷등록제 또는 직불제 기준(20~30%) 수당면적
- \* 적정 사육수수(등록제, 직불제)의 소숫점이하 숫자는 절사

## V. 참고 자료



<참고 1>

## 외국의 친환경축산직불제 사례

### 1) 영국

- 생산억제 및 낮은 사육 밀도 유지를 위해 **조방화 장려금 지급**
  - 육우와 유우 모두 해당되며 2가지 유형 중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
    - i) 단순형 : 1.4LU/ha 이하시 두당 100유로
    - ii) 표준형 : 1.4LU/ha 이하시 두당 80유로, 1.4~1.8LU/ha는 두당 40유로
  - \* LU(Livestock Unit) : 육우성우·경산우 1.0, 미경산우 0.7, 암돼지(50kg이상) 0.5, 육계(100두) 0.7
- 조건불리지역 활성화 및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**중산간지역의 암소·양 사육농가에 지원**
  - 지급대상 : 조건불리지역에 최소 10ha이상 초지(우유생산용 초지 제외)와 0.15LU/ha이상의 가축 보유
  - 지급단가 : 지역불리도 및 초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(25~68유로)
    - 초지면적 350ha 초과분은 50%, 700ha 초과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    - 예) 초지 900ha보유시, 350ha까지 100%, 나머지 350ha는 50%, 200ha는 지급제외
  - 추가적인 준수사항
    - Good Farming Practice를 따를 것, 보조수령후 5년이상 축산업 종사의무

#### ◆ Good Farming Practice란?

- 방목을 과도하게 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가축과 목초지를 건강한 조건으로 유지해야 함
- 초지가 가축에 의해 지나치게 밟히거나 짓눌리지 않아야 하며, 사료 수송차량의 바퀴자국이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함
- 토양, 물, 공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따를 것(권고사항)

## 2] 스위스

### □ 방목가축의 경쟁력 보호, 초지 및 경관유지등을 위해 동하절기 방목농가 지원

#### ○ 지급단가

- 동절기 : 소·말·양 등 RGVE 당 900 CHF(스위스프랑, 1CHF=900원)
- 하절기 : 우유를 생산하는 소·양·염소 LU당 300 CHF, 그외 방목가축은 NST당 260 CHF

\* ha당 방목 가축단위(Roughage Consuming Livestock Units, RGVE) 제한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, 산간지역 일수록 더 많은 초지가 요구됨

\* NST(per standard pasture) : 1 LU가 100일간 방목가능한 면적의 초지

### □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축산경영 및 축사시설개선을 뒷받침

#### ○ 축사개선 : 밧줄사용 금지, 무리를 지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연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축사를 유지·운영

- 지급단가('01) : LU당 소 90 CHF, 돼지 155, 닭 135

#### ○ 옥외사육 : 매월 26일이상 방목사육(동절기에는 13일이상), 돼지와 닭은 매일 옥외사육(번식돈의 경우 1주에 3일이상)

- 지급단가('01) : LU당 소 80 CHF, 돼지 155, 닭 180

### □ 조건불리지역에서 소사육을 하는 농가 지원

#### ○ 지원조건 : 최소한 1ha이상의 초지 또는 1 RGVE이상 가축 보유, 농가당 최대 20 RGVE까지 지급 가능

#### ◆ 직불제지급 공통요건

- 주별로 규정한 친환경 조건 및 동물보호법을 지켜야 함
- 사육규모당 지급비율이 차등 적용, 노동력당 지급액 한도 설정 등

### 3] 미 국

#### □ 2002년 신농업법에서 환경의 질 개선 프로그램(EQIP) 규정 보완

-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시설설치, 기술자문 등 지원
- 지원대상 : 환경을 보전·개선하는데 유익한 방법을 실행하려는 농가
- 지급요건
  - 지난 3년간 농가 평균수입이 250만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비농업 분야 수입이 전체수입의 25% 초과시 지급대상에서 제외
  - 계약기간은 1~10년간이며 계약한 첫해부터 지급 가능
  - 지원농가는 EQIP 실행계획서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자연자원보전 기관(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s)에 제출하고
  - NRCS State Conservationist(주정부의 NRCS 활동을 관리·감독)는 주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사례를 선정·지원
- 지급한도 : 2002~2007년 동안 개인 또는 경영체당 최대 \$450,000
  - 지급비율은 실제 소요비용(actual cost)의 75%까지 지원하되, 제한된 자원을 보유한 농가(저소득농가), 신규농업인 또는 10년미만 농업 종사자에게는 90%까지 지원가능
- 연방정부에서는 주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각 주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활용
- 국가 전체예산 중 **60%이상을 축산관련 분야에 의무적으로 할당**
  - 축산농가가 계약서에 분뇨저장시설을 포함할 경우에는 종합영양관리 계획서(Comprehensive Nutrient Management Plan) 제출 요구
  - \* **Nutrient management plan** : 분뇨처리, 사체처리방법 등을 포함, 대규모 농가의 경우는 축사에 대한 자료 및 분뇨 살포지역에 대한검사기록 등을 추가

#### 4] 독 일

- 유기축산농가의 이행기간동안의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지원
  - 지급단가 : 목초지 ha당 최초 210유로, 그후 5년간 160유로
  - 지급요건
    - 95%이상의 유기사료(EU는 70%)를 사용하며 항생제·성장촉진제 사용 불가
    - 인공비료를 사용한 초지 조성 금지
    - 분뇨 및 퇴비·부엽토를 사용하여 토양의 질 향상
    - 동물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복지 증진
    - 철저한 관리와 인증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
  - 유기농산품의 가공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

#### 5] 일 본

- 축산진흥종합대책
  - 조건정비 추진형
    - 지역단위별로 '사료증산추진계획'을 책정하여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촉진하고 벼짚·퇴비의 교환 등 자원순환형 지역영농 시스템 확립
    - 실천적 일본형 방목 모델 경영 육성, 계곡을 단위로 한 농림지의 일체적 이용에 의한 저비용 방목지의 확대, 공공목장 등의 활용 등
  - 기술실증 추진형
    - 지역실정에 맞는 자주적이고 다양한 사료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료증산에 의용적인 선도집단이 시·군등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생산성 향상, 토지이용 고도화 기술, 영농실증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
    - 초지·임야 일체적 이용 종합정비사업, 사료기반 확충사업, 자원재활용 축산환경 정비사업 등

<참고 2>

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-4호

약사법 제72조의6제2항 및 동물용 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“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(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-12호, '00.3.25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3년 7월 26일

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

##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약사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.) 제72조의6제2항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동물용 의약품”이라 함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 약품을 말한다.
2. “대상동물”이라 함은 소, 돼지, 닭 및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어류등을 말한다.
3. “휴약기간”이라 함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 의 약품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.
4. “출하제한기간”이라 함은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 의 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체내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(출하)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.



제3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법 제72조의6제3항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동물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별표1및 별표2에 제시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,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에 제시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3. 배합사료에 첨가된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별표1및 별표2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의사의 사용특례) 법 제72조의6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표3의 “출하제한지시서”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별표 1」

| 동물용의약품  | 대상 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 법 · 용 량   | 휴약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아목시실린<br>(Amoxicilli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(5개월 이하)<br>돼지(4개월이하)             | 1일용량으로 체중kg당 10mg이하의 양을 경구투여  | 소 20일<br>돼지 15일                      |
| 암피실린<br>(Ampicilli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(6개월이하)<br>돼지<br>닭                | 1일용량으로 체중kg당 15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용량으로 체중kg당 2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용량으로 체중kg당 1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    | 소 5일<br>돼지 5일<br>닭 2일                |
| 암피실린<br>(Ampicilli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<br>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10mg이하의 양을 근육, 또는 피하주사<br>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8mg이하의 양을 근육, 또는 피하주사   | 소28일(착유전 3일)<br>돼지 7일                |
| 암피실린<br>(Ampicilli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1두당 500mg이하의 양을 자궁내 주입  | 소5일(착유전12시간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카바독스<br>(Carbadox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8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| 돼지 7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염산클로르테트<br>라싸이클린(Chl<br>ortetracycline<br>HCL)      | 소(착유시제외)<br>돼지<br>닭,오리(산란시제<br>외)  | 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2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3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220mg이하의 양을 음수1L에 녹여 경구투여             | 소 10일<br>돼지 15일<br>닭,오리 7일           |
| 다노푸록사신<br>(Danofloxaci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(착유시제외)<br>돼지<br>닭,오리(산란시 제<br>외) | 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1.25mg이하의 양을 근육 또는 피하주사<br>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1.25mg이하의 양을 근육 또는 피하주사<br>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5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| 소 5일<br>돼지 25일<br>닭,오리 5일            |
| 디클록사실린나<br>트륨(Dicloxacil<br>in sodium)              | 소(착유시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유 초기에 분방당 500mg이하의 양을 주입   | 소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엔로플록사신<br>(Enrofloxaci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(3개월이하)<br>닭(산란시제외)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5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음수 1L당 50mg이하의 양을 녹여 경구 투여  | 소 30일<br>닭 12일                       |
| 엔로플록사신<br>(Enrofloxaci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(착유시제외)<br>돼지                     | 1일용량으로 체중 kg당 5mg이하의 양을 피하 또는 근육주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5mg이하의 양을 피하 또는 근육주사   | 소 20일<br>돼지 20일                      |
| 에리스로마이신<br>치오시아네이트<br>(Erythromycin<br>thiocyanate) | 닭(산란시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2mg이하의 양을 1L의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 | 닭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에리스로마이신<br>(Erythromycin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(6개월 이하)<br>돼지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8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<br>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20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 | 소 14일<br>돼지 7일                       |
| 후로르페니콜<br>(Florfenicol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<br>방어,송어,은어,뱀<br>장어             | 사료톤당 4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<br>경구투여  | 돼지 3일<br>방어 5일<br>송어,은어14일,뱀장어<br>7일 |

| 동물용 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 상 동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 법 · 용 량  | 휴약기간   |
|---|--|--|--|
| 후루메퀸<br>(Flumequine)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어, 광어, 송어,<br>잉어, 붕어, 뱀장어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<br>경구투여   | 방어, 광어, 송어, 잉어, 붕<br>어, 뱀장어 8일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겐타마이신<br>(Gentamicin)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.2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 | 돼지 14일   |
| 황산겐타마이<br>신(Gentamicin<br>sulf ate)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5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  | 돼지 40일   |
| 황산카나마이<br>신(Kanamycin<br>sulf ate)          | 돼지<br>닭(산란시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료톤당 18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<br>사료톤당 9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| 돼지 14일<br>닭 7일   |
| 황산카나마이<br>신(Kanamycin<br>sulf ate)          | 소(착유시 제외)<br>돼지<br>닭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5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5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 | 소 5일<br>돼지 10일<br>닭 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황산카나마이<br>신(Kanamycin<br>sulf ate)          | 소<br>돼지<br>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50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  | 소 30일<br>(착유전36시간)<br>돼지 30일<br>닭14일(산란전10일)           |
| 황산카나마이<br>신(Kanamycin<br>sulf ate)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1두당 160mg이하의 양을 비강내 분무   | 돼지 3일  |
| 황산네오마이<br>신(Neomycin<br>sulf ate)           | 소(착유시 제외)<br>돼지<br>닭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<br>사료톤당 20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<br>사료톤당 20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| 소 30일<br>돼지 20일<br>닭 1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노플록사신<br>(Norfloxacin)                      | 닭(산란시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닭 1000수당 1주령에 2g이하, 2-6주령에 5g이하, 7-18<br>주령에 10g이하, 성계에 12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| 닭 5일   |
| 올라퀸독스<br>(Olaquinox)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료톤당 5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| 돼지 28일   |
| 옥소린닉산<br>(Oxolinic acid)                    | 돼지<br>닭(산란시 제외)<br>방어<br>송어<br>잉어<br>뱀장어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3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| 돼지 5일<br>닭 5일<br>방어 16일<br>송어 21일<br>잉어 28일<br>뱀장어 25일 |
| 옥소린닉산<br>(Oxolinic acid)                    | 뱀장어<br>은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<br>10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  | 뱀장어 25일<br>은어 1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염산옥시테트<br>라사이클린<br>(Oxytetracycline<br>HCL) | 소(착유시 제외)<br>돼지<br>닭, 오리(산란시<br>제외)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1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500mg이하의 양을 1L의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| 소 7일<br>돼지 7일<br>닭, 오리 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동물용의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 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법·용량   | 휴약기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염산옥시테트라 사이클린 (Oxytetracycline HCL) | 소(착유시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피하, 근육, 정맥 및 복강내 주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15일<br>(비지속성제제)<br>소28일(지속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피하, 근육, 정맥 및 복강내 주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15일<br>(비지속성제제)<br>돼지 26일<br>(지속성제제)                   |
| 염산옥시테트라 사이클린 (Oxytetracycline HCL) |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1두당 1000mg이하의 양을 자궁내 주입   | 소 14일<br>(착유전60시간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1두당 500mg이하의 양을 자궁내 주입  | 돼지 14일  |
| 설파디메톡신 (Sulfadimethoxine)          | 돼지<br>닭(산란시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500mg이하의 양을 음수 1L에 녹여 경구투여          | 돼지 10일<br>닭 14일   |
| 설파디메톡신 (Sulfadimethoxine)          | 소<br>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50mg이하의 양을 근육 또는 정맥주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0mg이하의 양을 근육 또는 정맥주사 | 소14일(착유전5일)<br>돼지 1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설파메타진 나트륨(Sulfamethazine sodium)   | 소(착유시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.3g이하의 양을 음수 또는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10일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.3g이하의 양을 음수 또는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15일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닭, 오리<br>(산란시 제외)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1g이하의 양을 음수 1L에 녹여 경구투여   | 닭,오리 10일  |
| 티아무린(Tiamulin)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60mg이하의 양을 음수 1L에 녹여 경구투여   | 돼지 5일   |
| 티아무린(Tiamulin)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30mg이하의 양을 근육 주사   | 돼지 21일  |
| 주석산타이로신 (Tylosin tartrate)         | 소(3개월이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2g이하의 양을 음수 1L에 녹여 경구투여   | 소 14일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(1개월이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250mg이하의 양을 녹여 경구투여   | 돼지 3일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닭(산란시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500mg이하의 양을 녹여 경구투여   | 닭 3일  |
| 타이로신 (Tylosin)                     |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근육 주사   | 소 28일(착유전4일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근육 주사   | 돼지 28일  |
| 옥시테트라사이클린 (Oxytetracycline)        | 방어, 뱀장어, 송어, 참돔, 광어, 우럭, 담수어(잉어, 메기) | 1일 용량으로 체중 1kg당 50mg(역가)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어 20일,<br>뱀장어·송어·참돔 30일,<br>광어·우럭 40일<br>담수어(잉어, 메기) 20일 |
| 엔로플록사신 (Enrofloxacin)           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료톤당 15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| 10일   |
| 틸미코신 포스페이트 (Tilmicosin phosphate)  | 소(생후 20개월 이상의 착유우 제외)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피하주사  | 28일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(번식돈과 임신돈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| 사료톤당 40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| 7일  |

「별표 2」

| 동물용 의약품  | 대상동물      | 용법·용량  | 휴약기간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
| 암피실린+콜리스틴(Ampicillin+colistin)                       | 소         | 암피실린을 기준으로 사료톤당 10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7일             |
|  | 돼지        | 암피실린을 기준으로 사료톤당 10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 7일            |
|  | 닭         | 암피실린을 기준으로 사료톤당 10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     | 닭 7일             |
| 암피실린+콜리스틴(Ampicillin+colistin)                       | 소(6개월이하)  | 암피실린을 기준으로 1일 용량으로 10g이하의 양을 음수 200L에 녹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| 소 6일             |
|  | 돼지        | 암피실린을 기준으로 1일 용량으로 10g이하의 양을 음수 200L에 녹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| 돼지 6일            |
|  | 닭         | 암피실린을 기준으로 1일 용량으로 10g이하의 양을 음수 200L에 녹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| 닭6일(산란전5일)       |
| 암피실린+콜리스틴(Ampicillin+colistin)                       | 소         | 1일 2회 용량으로 체중 kg당 암피실린 100mg이 하, 콜리스틴 25만 IU 이하 양을 근육주사          | 소 28일(착유전3일)     |
|  | 돼지        | 1일 2회 용량으로 체중 kg당 암피실린 100mg이 하, 콜리스틴25만 IU이하 양을 근육주사            | 돼지 21일           |
| 세팔렉신+네오마이신(Cephalexine + Neomycin)                   | 소         | 건유전 세팔렉신, 네오마이신을 각 250mg이하의 양을 분방내 주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28일(착유전4일)     |
|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+네오마이신(Chlortetracycline+ Neomycin)        | 소(착유시 제외) |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기준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4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| 소 30일            |
|  | 돼지        |  | 돼지 20일           |
|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+설파메타진(Chlortetracycline+Sulfamethazine)   | 소(착유시 제외) |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기준 1일 용량으로 7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  | 소 10일            |
| 콜리스틴+스피라마이신(Colistin+spiramycin)                     | 소, 돼지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콜리스틴 5만IU, 스피라마이신 50mg이하의 양을 근육에 녹여 경구투여          | 소,돼지15일          |
|  | 닭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콜리스틴 20만IU, 스피라마이신 100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                | 닭 15일<br>(산란전5일) |
| 콜리스틴+스피라마이신(Colistin+Spiramycin)                     | 소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콜리스틴 5만 IU, 스피라마이신 65만 IU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             | 소 28일            |
|  | 돼지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콜리스틴 5만 IU, 스피라마이신 65만 IU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             | 돼지 28일           |
|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+스피라마이신(Dihydrostreptomycin+ Spiramycin) | 소(착유시제외)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황산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8mg, 스피라마이신 아디페이트 4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  | 소 28일            |
|  | 돼지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황산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40mg, 스피라마이신 아디페이트 20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| 돼지 28일           |
|  | 닭(산란시제외)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황산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40mg, 스피라마이신 아디페이트 20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| 닭 14일            |

| 동물용 의약품  | 대상동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법·용량  | 휴약기간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리스로마이신 치오시아나이드+설파다이아진+트리메토프림(Erythromycin+thiocyanate+Sulfadiazine+Trimethoprim)                  | 소(6개월 이하)<br>닭, 오리<br>(산란시 제외)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7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에리스로마이신 3.24g, 설파다이아진3.24g 이하의 양을 음수 200L에 녹여 5주령 2500수, 10주령 1500수, 산란계 800수에 경구투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10일<br>닭,오리 10일          |
| 겐타마이신철(Gentamicin Iron dextran)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겐타마이신 기준, 1일 용량으로 3일령, 16일령에 10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  | 돼지 40일                     |
| 키타사마이신+설파메타진(Kitasamycin+Sulfamethazine)   | 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료통당 키타사마이신, 설파메타진 각 30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| 돼지 15일                     |
| 린코마이신+스펙티노마이신(Lincomycin+Spectinomycin)  | 돼지<br>닭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린코마이신 33.3g, 스펙티노마이신 66.75g 이하의 양을 음수 1600L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린코마이신 33.3g, 스펙티노마이신 66.75g을 음수 200L에 녹여 경구투여  | 돼지 8일<br>닭 2일              |
| 린코마이신+스펙티노마이신(Lincomycin+Spectinomycin)  | 소<br>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2회 용량으로 체중 kg당 린코마이신 5mg, 스펙티노마이신 10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<br>1일 2회 용량으로 체중 kg당 린코마이신 5mg, 스펙티노마이신 10mg이하의 양을 근육주사   | 소 14일(착유전3일)<br>돼지 14일     |
|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+황산네오마이신(Oxytetracycline HCL + Neomycin sulfate)  | 소(착유시 제외)<br>돼지<br>닭(산란시 제외)   | 1일 용량으로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기준,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기준,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2mg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기준, 1일 용량으로 1g이하의 양을 음수 1L에 녹여 경구투여 | 소 30일<br>돼지 20일<br>닭 14일   |
|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+황산네오마이신+올레안도마이신+푸레드니솔론(Oxytetracycline HCL+Neomycin sulfate+Oleandomycin+Prednisolone) |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염산옥시테트라사이클린 0.2g, 황산 네오마이신 0.1g, 올레안도마이신 0.1g, 푸레드니솔론 0.005g이하의 양을 분방내에 주입   | 소 3일<br>(착유전3일)            |
| 크레미졸페니실린G+페니실린G나트륨(PenicillinG Clemizole+PenicillinG sodium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<br>돼지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크레미졸 페니실린G 6백만 IU 페니실린G 나트륨 150만IU, 이하의 양을 근육 또는 피하주사<br>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크레미졸 페니실린G 6백만 IU 페니실린G 나트륨 150만IU, 이하의 양을 근육 또는 피하주사                   | 소 30일<br>(착유전3일)<br>돼지 30일 |

| 동물용의약품   | 대상동물           | 용법·용량  | 휴약기간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페니실린 G 칼륨+황산스트렙토마이신 (Penicillin G potassium + Sreptomycin sulfate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돼지<br>닭        | 황산스트렙토마이신기준, 1일 용량으로 체중 2-15kg에 1.48g, 15-70kg에 4.55g, 70-100kg에 5.94g 이하의 양을 음수에 녹여 경구투여<br>1일 용량으로 페니실린 G 칼륨 198만 IU, 황산스트렙토마이신 4.95g이하의 양을 음수 70L에 녹여 초생추 2000-4000수, 중추 700-1000수, 성계 400-500수에 경구투여 | 돼지 14일<br>닭 12일            |
| 프로카인페니실린G +벤자틴페니실린G+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(Penicillin G Procaine+Penicillin Gbenzathine+Dihydroseptomycin) | 소, 돼지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프로카인페니실린 G 900IU, 벤자틴 페니실린 G 600IU, 디하이드로 스트렙토마이신 12mg이하의 양을 근육 주사  | 소 30일<br>(착유전3일)<br>돼지 30일 |
| 프로카인페니실린G +페니실린 G 칼륨 (Penicillin G Procaine+Penicillin G Potassium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, 돼지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,000IU이하의 양을 2일 간격으로 2회 근육주사  | 소 30일<br>(착유전3일)<br>돼지 30일 |
| 설파메톡사졸+트리메토프림 (Sulfamethoxazole +Trimethoprim)   | 소, 돼지          |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트리메토프림 80mg, 설파메톡사졸 400mg이하의 양을 근육 주사   | 소 14일<br>(착유전7일)<br>돼지 14일 |
| 티아무린+설파메타진 (Tiamulin+Sulfamethazine)   | 돼지<br>닭(산란시제외) | 사료톤당 티아무린 80g, 설파메타진 200g 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<br>사료톤당 티아무린 80g, 설파메타진 200g 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| 돼지 15일<br>닭 10일            |
| 타이로신+설파메타진 (Tylosin + Sulfamethazine)  | 돼지             | 사료톤당 타이로신 100g, 설파메타진 10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  | 돼지 15일                     |





